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法學碩士 學位論文

西海北方限界線 紛爭의
平和的 解決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f Peaceful Settlement on the West
Northern Limit Line Dispute*

指導教授 李 溶 熙

2008年 8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海 事 法 學 科

李 東 赫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서해북방한계선의 설정과 분쟁요인	5
제1절 서해북방한계선의 설정	5
제2절 서해북방한계선 주변 수역의 분쟁요인	7
1. 경제적 요인	7
2. 안보적 요인	11
제3절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의 입장검토	13
1. 우리 측의 입장 및 검토	13
가. 국방부의 입장	13
나. 한국학자들의 입장	15
다. 우리 측 입장의 검토	19
2. 북측의 입장 및 검토	21
가. 북측의 입장	21
나. 북측 입장의 검토	26
3.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준수사례	32
가. 1959년 조선중앙연감	32
나. 북한 간첩선의 서해북방한계선 월선·침투 및 격퇴위치 관련 양측주장	32
다. 북한 수해물자 수송선박과 우리 호송선단의 상봉위치	32
라. 한국의 비행정보구역변경(안)	33

마. 북한 조난선박 및 승조원 인계시 상봉위치 34

제3장 서해북방한계선의 법적 성질 36

제1절 정전협정과과의 관계 36

- 1. 정전협정의 개념 36
- 2.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37
 - 가. 법적 성격 37
 - 나. 정전협정의 실효성 38
- 3. 정전협정상 경계획정 40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와의 관계 44

- 1.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및 성격 45
 - 가. 의의 45
 - 나. 성격 45
- 2.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불가침경계선 규정 49

제3절 소결 51

제4장 서해북방한계선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53

제1절 서해안 평화지대의 설정 53

- 1. 평화지대의 개념 53
- 2. 해양에서의 평화지대 설정 사례 54
 - 가. 인도양 평화지대(Indian Ocean as Zone of Peace)
..... 54
 - 나. 남대서양 평화협력지대(The South Atlantic As a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57
 - 다. 지중해 평화협력지대(The Mediterranean As a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58
 - 라.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61
마. 평화지대의 설립 내용	64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65
가. 논의의 배경 및 추진경과	65
나. 서해 공동어로구역	67
4. 소결	73
제2절 평화체제로의 전환	74
1. 평화체제의 개념	74
가. 의의	74
나. 한국적 개념의 평화체제	75
2. 평화협정의 체결	76
가. 평화협정의 개념	76
나. 평화체제와의 관계	77
다.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77
3.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지위	78
가. 일반국제법상 남북의 법적지위	79
나.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지위	80
다. 남북평화협정의 체결과 북한의 지위	81
4. 소결	81
제3절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서해해상경계선	83
1. 국제법상 해상경계선 설정시의 외측한계	83
가. 기선	83
나. 영해	84
다. 배타적 경제수역	84
라. 대륙붕	85
2. 국제법상 경계획정 원칙	86
가. 합의의 원칙	86
나. 형평의 원칙	87

다. 중간선 · 등거리원칙	89
3. 경계 획정시 섬의 효과	90
가. 섬의 지위	91
나. 섬의 효과	95
4. 서해 해상경계 획정	101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7
<i>Abstract</i>	113

<표 목차>

<표 1> 용진군 수산물 어획고	8
<표 2> 연평면 수산물 위탁판매 현황	8
<표 3>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주요 발표	25
<표 4> 정전협정의 기능유지 조항 분석표	39
<표 5> 서해 공동어로구역 관련 논의	72
<표 6> 중간선-등거리원칙 경계확정시 남북한의 기점비교	101

<그림 목차>

<그림 1> 서해상 북방한계선	7
<그림 2> 서해북방한계선 부근 중국어선의 분포현황	10
<그림 3> 북한주장서해해상경계선(추정)	23
<그림 4> 북한 주장 서해 5개 섬 통항로	24
<그림 5> 조선중앙연감(1959년 조선중앙통신사 발행)	32
<그림 6> 북한 간첩선의 서해북방한계선 월선·침투 및 격퇴위치 관련 양측주장	33
<그림 7> 북한 수해물자 수송선박과 우리 호송선단의 상봉위치	34
<그림 8> 비행정보구역(FIR)요도	35
<그림 9> 북한 조난선박 및 승조원 인계시 상봉위치	35
<그림 10> 양측이 주장하는 서해 공동어로수역	71
<그림 11> 메인만 경계획정	96
<그림 12> 영·불 대륙붕 특별중재판결	98
<그림 13> 튀니지·리비아간 대륙붕경계	99
<그림 14> 메인만의 경계-1	99
<그림 15> 메인만의 경계-2	10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가 한국정전협정체결 후 설정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을 둘러싼 논란은 현 남북관계에서 핵문제 다음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99년의 연평해전과 2002년의 서해교전을 통해 서해북방한계선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대상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및 서해북방한계선의 관련 발언 등이 서해상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의 북방한계선 문제는 영토적 관할권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수호라는 개념과 맞물려, 정치·경제적 차원에서도 주요 갈등 사안의 하나로 비화되고 있다.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분쟁은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정전협정이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하고 있다. 1951년 7월부터 1952년 1월까지 진행된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당시의 군사접촉선을 중심으로 한 지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였으나, 해상군사분계선과 관련해서는 서해 5개 도서를 연합군 측의 관할권 하에 둔다는 사항 이외에는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정전협정의 발효로 쌍방간 무력행위가 정지되자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병력철수 등 정전협정 내용의 이행과 해상경비 임무를 위한 실질적 필요를 위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해군부대에 시달하게 된다.¹⁾

1) 박창권, “서해북방한계선과 남·북한관계”, 『STRATEGY 21』, 통권12호 (2003), 7쪽.

이러한 정전협정상의 입법적 흠결 및 유엔군사령부에 의한 일방적인 획선을 근거로 하여 북한은 북방한계선의 무효화를 1973년 서해사태 이래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서해 5도 주변 수역은 정전이래로 한반도에서 가장 복잡하고 무질서한 해역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분쟁과 마찰이 발생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많은 곳으로서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남·북한 간에는 현저한 입장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학계에서도 서해북방한계선의 성격을 두고 입장차이가 분분하다.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로 서해상에서의 일체의 무력의 도발이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내부분쟁 불간섭의 원칙과 상호 비방, 중상금지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약속을 그 첫날에 파기함으로써²⁾ 합의서 발효를 무색하게 하였다. 이후 군장성급회담 및 실무회담 그리고 남북고위급 회담 등에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1973년에 보여준 태도를 일관해 오고 있다.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선언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실행을 위하여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11월 말에 있었다. 본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 합의,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문산-봉동 간 열차 화물수송,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북한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경협사업이 활기를 띤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공동어로수역과 직결되는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측은 북방한계선을 기선으로 남과 북이 같은 면적이 되도록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북방한계선 이남에 공동어로수역을 정하자고 고집하며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고, 또한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의 전제조건으로서 서해상의 새로운 경계선

2) 김영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해양전략』, 제83호(1994. 6), 118쪽.

확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입장차이를 근본으로 하여, 남한은 북한의 잦은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야기되는 무력충돌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방한계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오히려 북방한계선 부근에 회색구역을 발생시켰다. 이로 인하여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어부지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³⁾ 또한 분쟁의 재발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정부의 대북 정책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서해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서해 북방한계선에 관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북방한계선의 분쟁 해결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북방한계선 설정의 당위성을 위해 국내 학자들 간에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을 통하여 북방한계선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내 학자들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법적인 접근법은 남북 해상군사분계선으로서의 북방한계선의 법적인 지위를 설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간의 견해차이는 존재하고, 유엔사와 우리의 입장에서도 일부 차이점이 노출되어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 주장의 틈새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제2장은 ‘서해북방한계선의 설정과 분쟁요인’이라는 제목으로 북방한계선의 설정경위와 서해북방한계선의 분쟁요인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양국 즉, 북한과 남한측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북한측 주장에 대한 반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3장은 ‘서해북방한계선의 법적 성질’로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

3) 김태준, “NLL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국방연구』, 제49권 제1호 (2006. 6), 176쪽.

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관련 규정들을 분석하여 서해북방한계선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서해북방한계선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서해안평화지대와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안으로 서해안평화지대와 관련하여 서해상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기존의 판례들을 통하여 도출하였고, 서해상의 평화지대 설정의 핵심요소로서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내용도 고찰하였다. 두 번째 방안으로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남북한의 지위를 기준으로 서해상의 경계 설정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제2장과 제3장 및 제4장에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서론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국내학자들의 논문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도 참조하였다.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논문들의 경우, 국내학자들 간에도 북방한계선의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으며, 북방한계선을 규정하고 있는 정전협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해석이 달라 양측을 비교분석하는 가운데, 다수설의 입장에서 논문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1999년과 2002년에 발생한 무력충돌과 남북간의 수차례에 걸친 각종 합의에 대한 내용은 신문기사 및 관련기관 보도 자료를 참조하였고, 새해상경계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국제법 서적들과 해상경계설정관련 논문들을 정리하였다.

제2장 서해북방한계선의 설정과 분쟁요인

제1절 서해북방한계선의 설정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정전협정은 제1조 2항과 3항의 부속지도에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를 명시하고 있다. 정전으로 한국과 북한과 육지경계는 결국 이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으로 되었으나 수역의 경계에 관하여 정전협정은 아무것도 정한바가 없다.⁴⁾

당시 정전협정에서 동·서해의 해상 군사분계선 획정에 소홀히 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한국전쟁 중 한반도 육상에는 공산군과 유엔군의 진퇴의 변화가 많았으나 해상에서는 거의 개전 초기부터 정전으로 종전되기까지 일관해서 한반도의 전 주변 해역을 유엔군이 장악하고 이를 봉쇄하고 있었다. 이에 유엔군측은 해상 및 공중 우세권의 철회 대가로서 육상 분계선을 지상접촉선보다 북방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지상 접촉선은 육·해·공의 전 군사역량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군측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육상분계선 관련 협상에서는 해상 및 공중에서의 유엔군측 우세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⁵⁾

그러므로 교전당사자가 쌍방의 군사역량의 현실적인 대치를 전제로 하는 군사분계선은 적어도 해상에 있어서는 육상전선에 연결되어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⁶⁾

또한 육지에서 어느 정도의 폭까지를 관할수역으로 하고 나머지를 공

4)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 북21, 2004), 140쪽.

5) 임규정, 서주석,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고찰과 현실적 과제”, 『현대이념연구』, 제14집(1992. 2), 51쪽.

6) 김영구, 전계서, 143쪽.

해로 하느냐에도 의견이 달랐다. 유엔군 측은 당시 해양법의 영해 폭인 3해리를 주장하였으나, 공산측은 3해리로 할 경우 교전 쌍방간의 근접으로 인해 전투가 재개될 수 있으므로 정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12해리로 하자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유엔군 측에 의한 해상봉쇄 우려와 해상 기동공간 확보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유엔군 측은 해상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정전협정 초안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3해리 규정은 국제 해양법규에 부합되는 행동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방간의 견해 차이는 후속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못했고, 공산측은 합의가 어려워지자 이를 정전협정 초안에서 삭제하고자 요구했다.⁷⁾

결국 이렇게 하여 해상군사분계선이 확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의 병력 간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는 북진통일의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실제로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간간히 남북한간에 해상 무력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그러자 유엔군 측은 국군병력(함정 및 항공기)의 대북 접근을 막기 위한 군사 활동의 외측(북방)한계를 설정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정전협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의 병력 철수 등 정전협정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해상경비 임무를 위한 실질적 필요가 더욱 절실했다.⁹⁾ 이에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한 달 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및 국군 병력과 한국 어민의 북한 월경을 방지하고, 아울러 공산군 병력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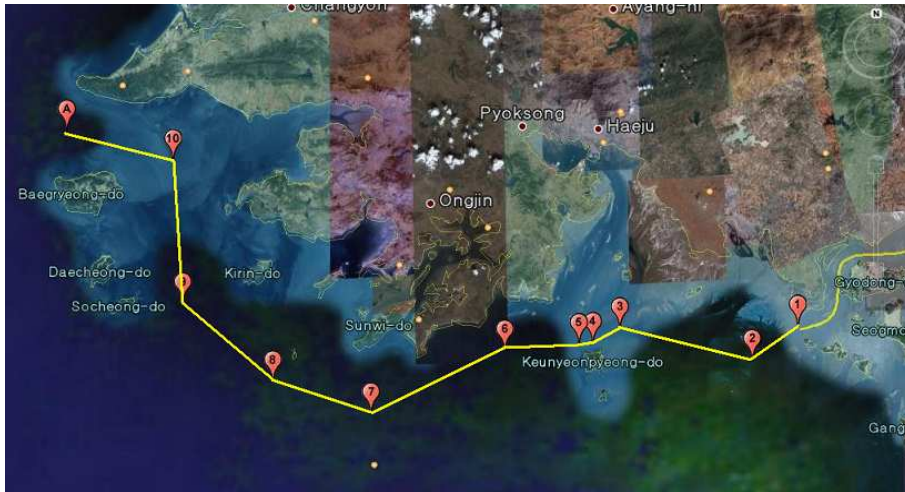
이러한 협정상의 흠결과 일방적인 획선이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분쟁을 낳게 된 것이다.

7) 임규정, 서주석, 전개논문, 51쪽.

8) 제성호, “북방한계선의 법적 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앙법학』, 제7집 제2호(2005. 8), 110쪽

9) 김영구,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7권 제1호(2000. 5), 2쪽.

<그림 1> 서해상 북방한계선



출처; ©2008 Google

제2절 서해북방한계선 주변 수역의 분쟁요인

1. 경제적 요인

2002년의 서해교전은 서해상에 조성되는 꽃게어장을 비롯한 어자원이 그 한 원인이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¹⁰⁾

북한 측 어획고를 추산하기 위해 우리의 어획고를 살펴보면 서해북방한계선 지역의 연평·대청어장에서는 2005년에 연평면에서 68억원, 백령면에서 43억원, 대청면이 22억원의 어획고를 기록하였으며, 이중 70% 이상이 꽃게를 비롯한 갑각류에 의한 소득이다.¹¹⁾

연평어장에서는 1, 2월은 기상 악화로 7, 8월은 꽃게 산란기로 어로작업을 금하고 있는 데, 아래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6월은 산란전 꽃게잡이의 적기로서 연중 최대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다.

10) 이장희,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외법논집』, 제12집(2002. 8), 2~3쪽.

11) 용진군청, 용진군 통계연보, 2006, 100쪽.

<표 1> 용진군 수산물 어획고

단위 : 톤, 천원

연별 및 면별	합 계		어 류		갑 각 류	
	Total		Fishes		Crustacean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2001	4,695.9	36,887,000	775.3	7,300,000	2,582.7	24,870,000
2002	4,659.3	34,783,000	858.9	8,031,000	2,560.2	21,461,000
2003	6,191	45,234,000	893	7,844,000	2,582	27,694,000
2004	5,630	34,422,000	1,459	7,345,000	738	16,333,000
2005	5,955	25,617,000	2,024	7,661,000	540	7,804,000
북 도	260	1,111,000	15	127,000	4	46,000
연 평	743	6,877,000	361	1,888,000	354	4,802,000
백 령	2,046	4,362,000	1,107	1,680,000	1	9,000
대 청	373	2,256,000	326	1,825,000	1	26,000
덕 적	203	2,100,000	48	479,000	66	1,315,000
자 월	410	3,534,000	103	1,252,000	18	555,000
영 흥	1,920	5,377,000	64	410,000	96	1,051,000

출처 : 용진군청 해양수산물(2005년 12월)

<표 2> 1999년~2002년 연평면 수산물 위탁판매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999년	20.5	50.4	51.7	2.9	18.1	30.6	12.6	199
2000년	18.2	43.7	98	9.4	50.7	42	2.1	264.3
2001년	8.4	30	59.1	25.2	39.6	29	7.2	198.7
2002년	5.7	22	29.4	18.8	47	33.4	0.4	156.8

출처: 류완수, "서해 북방한계선 분쟁 해결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13쪽.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이 발생한 1999년과 2002년에는 어로통제로 5월과 6월의 어획량이 비슷하나 2000년과 2001년에는 6월의 어획량이 5월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 또한 산란전의 꽃게가 고가로 대외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6월에 집중적으로 서해북방한계선을 월선하여 어로작업

을 하는 것이다.

꽃게잡이는 어려운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외화벌이의 큰 수단이 되고 있으며 어획량의 높은 증가율은 외화획득에 대한 북한 정부의 강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어획고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은 연평균 2,500여 톤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며 수산물에 북한의 주력 수출품임을 고려하면 20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연평-대청도 사이 서해북방한계선지역에서의 어로작업에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어로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서해북방한계선인접수역에서의 어로작업은 연안 각 지방 수산사업소 어선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북한군 소속 어선들만이 어로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서해북방한계선이 가지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서해북방한계선의 분쟁화를 통해 우리 정부에 안보문제 안정을 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동안 서해북방한계선 주변수역에서 남북간의 긴장을 피하기 위해 남북양측은 일체의 어업활동을 자제해 왔다. 그래서 낮은 수심과 어로제한으로 이 일대는 꽃게의 최대 서식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어로통제선을 설정하고 어로를 자제하는 사이 불행히도 중국 어선들이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기 때문에 단속 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을 남북으로 넘나들며 단속하기가 매우 곤란하다.¹²⁾

서해북방한계선은 수도권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천항 및 평택항 등에 대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서해북방한계선의 존재는 이들 항구의 출입항로에 대한 북한군의 군사적 위협을 북단에서 사전 저지·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천항 출입항로는 서해북방한계선에 비교적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 서해북방한계선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어 우리의 안보부담이 커질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서해안 개발과 서해 안전항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12) 연간 일일평균 200여척 안팎의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꽃게뿐만 아니라 홍어·우럭·놀래미와 치어들까지 싹쓸이 조업을 하며, 특히 2003년부터는 조업척수가 급증하여 우리 군과 해경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07, 40쪽.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서해북방한계선의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서해 특정해역을 포함한 경기만 일대의 해양자원이 갖는 가치는 매우 크다. 아직 해저자원에 대한 개발과 탐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저자원에 대한 활용도 또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서해북방한계선 부근 중국어선의 분포현황



출처: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2007, 41쪽.

반면에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으로 인해 경기만 일대를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북한 어민들의 활동은 연안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경기만 일대에서 자원 개발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주요 항구인 해주항 출입항로는 한국 측의 선택에 따라 제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간 정전협정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 국적선박의 북방한계선 통과를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비록 현재 북한의 해상교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적지만 이는 북한의 바다를 통한 교역활동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¹³⁾

13) 박창권, 전개논문, 30쪽.

2. 안보적 요인

서해북방한계선이 남북한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은 법규정상으로서 경계문제가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서해북방한계선 주변 수역이 남북한에 대하여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경계문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간의 정전협상에서 해상에서 양측 관할권을 구획하는 분계선을 명확히 하지 못했고 그것이 정전협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불가침 경계선에 대해서 남북간 합의가 규정되어 있는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서해북방한계선이란 이름의 그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⁴⁾

또한 한국의 영해선포 현황을 보면, 한국은 동해안은 통상기선에 의하고, 남해와 서해는 직선기선에 의해 그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서해의 경우 직선기선을 경기도 이남의 소령도 까지만 선포하였다.¹⁵⁾ 김영구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이 북한과의 대치상황 특히 서해 5개 도서 지역의 긴장을 염두에 두고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조심성의 소지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영해 범위의 불명확성은 때로는 불필요한 분쟁과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¹⁶⁾

북한의 경우 1955년 3월 5일 내각결의 제25호에 의하여 12해리 영해를 선포하였으며,¹⁷⁾ 1977년 6월 21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하여

14) 김영구 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에서 장차 남과 북이 협의하여 확정시킬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북한이 현재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북방한계선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영구, 『독도, NLL문제의 실증적 정책분석』 (다솜출판사: 부산, 2008), 230쪽.

15) 영해 및 접속수역법(1977년 12월 31일 제정, 1995년 12월 6일 일부개정)참조.

16)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해양법』, 130~131쪽.

17) Choon-ho Park, *East Asia and the Law of S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8), p.170; 김찬규, “북한의 영해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1호(1995), 82쪽에서 재인용.

200해리 경제수역을 결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¹⁸⁾ 북한은 또한 1977년 8월 1일 50해리 군사수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수역을 선포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해기준선이나 기준점, 외측한계선의 좌표나 지도를 공표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¹⁹⁾ 다만 서해 5개 도서군과 관련하여 그 주변수역이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한 것은 분명하다.²⁰⁾ 말하자면 한국 측의 서해 5개 도서군은 북한 측의 관할수역 내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적으로 명문화된 군사분계선이 아니라는 점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소령도 이북 수역에 대한 영해선포를 하지 않았고, 70년대부터 12해리 영해의 국제적 추세와 서해 5도와 북한연안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하여 북한과의 법적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현실이다.²¹⁾

서해북방한계선은 북한의 기습공격전략의 실행가능성을 제거해 한국 안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방위를 위한 완충지대를 제공한다. 서해북방한계선에 전방 배치되어있는 함정과 서해 5도서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조기경보를 통해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²²⁾ 서해북방한계선은 지리적으로 남한보다 북한 쪽에 훨씬 근접하여 있다. 서해북방한계선이 북한의 연안과 근접하여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 측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안보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 서해북방한계선은 한국의 해역통제 활동을 보다 공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한국은 방어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세적 군사력 운용이 제한된다. 군사력 운용에 대한 부담은 증대될 수 있지만 이는 북한연안에서의 군사력 활동을 통해 한국의 군사능력을 직접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18) 상계논문, 87쪽.

19) 상계논문.

20) 1973년 12월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정전협정 13항의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전협정상 우도 서남쪽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끝점인 (가)점의 북·서쪽 수역 모두를 자기들의 연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서울: 신오성기획사, 2007), 20쪽.

21) 오병철, “북방한계선 분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0, 18쪽.

22) 박창권, 전계논문, 26~27쪽.

도 한다. 반면에 북한해군은 북방한계선으로 인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수 세적·방어적 전략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북한해군의 전진배치 전력은 기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훈련 및 전력의 집결 등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영토보전 차원에서 한치의 땅이나 해안을 양보할 수 있는 국민적 정서가 아니며, 서해북방한계선은 서해 5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선이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이 없어진다면, 한국 해군의 최전방방어선이 붕괴되는 치명적인 사태가 초래되어 한국의 수도권과 경기도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남북간의안보상의 이해는 서해북방한계선이 가지는 영토로서의 가치와 서해북방한계선이 무효화 될 경우 미치는 안보상 위협, 서해북방한계선분쟁 그 자체를 전략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의 입장검토

1. 우리 측의 입장 및 검토

가. 국방부의 입장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다.²³⁾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서 현재 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서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채 협상을 종결하였다.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에서 북위

23) 국방부, 전게서, 24~27쪽.

38도선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서쪽 사이에 위치한 도서 및 해면은 전쟁 발발 이전은 물론이고 정전협정 체결당시에도 남측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상호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유엔군은 정전협정 당시 점령하고 있던 38도선 이북 도서(남포 서방 ‘초도’, 청천강 서방 ‘대화도’, 원산 동방 ‘여도’)들을 북한에 돌려주고 38도선 이남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38도선 이남에 있는 해주 및 웅진반도에 대한 유엔군의 완전 봉쇄상황이 초래되므로 유엔군은 북한 측에 좀 더 양보하여 우리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38도선 이남의 도서 중 북한 측의 육지에 인접한 일부도서를 북한 측의 통제 하에 두는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체결 당시 남측의 통제 하에 있던 북위 38도선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서쪽 사이의 해면은 상기와 같은 정전협정의 조문상으로 볼 때 당연히 남측의 관할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선이기는 하지만, 전쟁 종결 당시 쌍방 당사자간의 특수한 전력배치 관계와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ㄴ목, 동 제15항의 조문해석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성립된 해상 군사분계선이며, 정전협정의 주체들이 당연히 준수해야 할 해상의 군사분계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상기 정전협정 제2조 13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으므로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 오고 있는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북방한계선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간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간에 합의되어야 하며, 남과 북 사이에 합의가 있기 이전까지는 북방한계선이 남북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한국학자들의 입장

(1) 현존 경계선 긍정설

국내에서는 서해북방한계선의 유효성을 긍정하며 현존하는 경계선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통설이다. 남북 간 해상 군사 분계선에 관한 정전협정 규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규정의 미비를 기화로 서해 5도 주변 해역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는 북한 주장의 논리적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학자들은 모호한 정전협정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논리를 전개하여 대체로 남북간의 해상 군사분계선으로서 북방한계선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굳이 분류하자면 ① 응고설, ② 특별관습법설 내지 묵시적 합의설, ③ 전쟁수역설, ④ 실효적 지배설, ⑤ 필수적 사후조치설, ⑥ 남북기본합의서 추인설, ⑦ 중간선 원칙 부합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⁴⁾

(가) 응고설

본래 응고이론(consolidation theory, principle of consolidation)이라 함은 영토 (특히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영역권은 단순히 점유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영토 취득만이 아니라, 합의(agreement-t)나 승인(recognition) 또는 묵인(acquiescence)과 같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응고되며 확정되어 간다는 이론을 말한다. 응고설은 이러한 응고이론을 차용해 서해 북방한계선의 법리 구성에 적용한다. 이 입장에 의하면, 서해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실효적 해상경계선으로 지난 40여년이상 동안 북한 측의 사실상 묵인 하에 성립된 여러 관행을 통해 명확하게 응고되었다고 한다.

(나) 특별관습법설 또는 묵시적 합의설(tacit agreement theory)

북방한계선이 유엔사와 공산측(또는 남북한)간에 묵시적 합의가 형성되어 특별 관습법의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은 유엔군사령부의 일방적 조치로 설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수십 년간 공산군(북한)측에서 아무런(명시적)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경계선은 이론상 정전체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쌍방간의 묵시적 합

24) 제성호, 전제논문, 115쪽.

의(pactum tacitum)내지 동의가 이루어져, 정전협정 자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관습법으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준수하고, 현상의 체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전쟁수역설 : 정전체제 하의 ‘방위수역’ 또는 ‘작전수역’설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은 정전체제하에서 설치된 것으로 이른바 전쟁수역 또는 방위수역의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이다.²⁵⁾ 국제법상 정당성을 갖는 이러한 방어수역의 북측 한계선인 북방한계선은 당연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통한 명시적 경계선이 획선 되기까지는 유효한 해상경계선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 실효적 지배설 : 실효성의 원칙

국제법질서는 권원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실적인 사실상의 지배를 존중한다는 ‘실효성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에 의해 규율되는 바, 여기서 실효성이란 사실상 존재를 확인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찍부터 국가·정부·교전단체의 승인, 전시검열, 봉쇄, 선점 등의 경우에 널리 적용되어 온 실효성의 원칙은 북방한계선에 대해서도 적용 내지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즉 북방한계선의 실효적 내지 사실적 지배는 북방한계선 제도에 의한 새로운 법적 권리와 의무의 창설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일부 학자는 서해 5도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중단 없이) 한국의 주권과 관할권 하에 있었음(실효적 지배)을 들어 북방한계의 역사적 권원 내지 본원적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²⁷⁾

(마) 필수적 사후조치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및 제15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

25) 상계논문, 113~115쪽.

26) 김명기, “서해 5도서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23권 제1, 2호(1978), 333~334쪽.

27) 김정건, “서해 5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33권 2호(1988), 143쪽

수적인 조치로서 설정·시행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갖기(유효성 취득)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²⁸⁾ “북방한계선은 비록 정전협상에서 합의된 선은 아니지만, 정전협정 이행과정에서 쌍방의 무력 충돌방지과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정된 것으로서 정전협정의 근본 취지와 제 원칙에 부합되는 선이다”라는 입장²⁹⁾은 이 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바) 남북기본합의서 추진설

북방한계선은 본래 유엔군 측과 공산군측간의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래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해상경계선은 아니지만, 1992년 2월에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구속력을 갖게 된 남북한간의 ‘사실상의 해상 경계선’이라는 입장이다.

(사) 중간선 원칙 부합설

북방한계선은 서해 5도와 옹진반도 등 북한의 연안(또는 인근도서)간에 대체로 등거리에 위치한 중간선에 입각해 획선된 해양경계선으로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나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등에서 확립된 영해경계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³⁰⁾

(2) 현존 경계선 부정설

북방한계선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북방한계선을 현존 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다음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사령부의 자기 제한적 조치로써 일방적으로 설정된 조치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정전협정 제 5조 61항³¹⁾에 의거 이는 정전협정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국제법적 구속

28) 김영구, 전계논문, 18~20쪽.

29) 국방부, 전게서, 38쪽.

30) 김명기, 전계논문, 332~333쪽; 김정건, 전계논문, 143, 154쪽.

31) 제5조 61항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

력도 없다.

둘째, 북방한계선은 서해5도를 연결하는 선을 그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전협정 제2조 13항 나목과 제15항의 위반이다.

셋째, 북한이 40여 년간 북방한계선을 묵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북한은 1973년 이래 연 평균 40회 이상 북방한계선을 월선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다.³²⁾

넷째, 북방한계선의 국제관습법성에도 의문이 있다. 관습법 성립요건의 하나인 ‘지속적이고 획일적인 관행(constant and uniform practice)’, 즉 정형화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섯째, 서해 5도 주변 해역이 당연히 한국의 영해에 속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여섯째,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불가침의 구역과 경계선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규정 중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의 의미는 쌍방(남과 북)이 공동으로 관리해 온 구역(예컨대 한강하구 공동수역이나 육상의 비무장지대)을 의미하며, 해상의 북방한계선은 쌍방이 관할한 것이 아니라 유엔군 측 일방만이 관할해 온 구역이다.³³⁾

다. 우리 측 입장의 검토

(1) 현존 경계 긍정설

국내 학자들의 입장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으나, 김영구 교수가 각각의 입장들을 검토하였다.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정전 성립 이래 1973년까지 약 20년간 사실상 양측의 경계로 기능하여 온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일종의 역사적 권원의 응고이론을 원용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인 평화적 점유와 상대방의 묵시적인 승인 등이 그 요건으로 될 것

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

32)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인 군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통권 제3호(1999년 여름), 23~66쪽; 이장희, 전계논문, 42쪽.

33) 리영희, 전계논문, 29~32쪽; 이장희, “서해5도의 국제법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 『한국외대 외법논집』, 제10집(2001, 8), 34~37쪽.

이나, 정전의 전 기간을 통하여 긴장상태로서 대치해 온 남북한 간에 있어서 이러한 평화적인 점유의 계속이나 묵시적인 승인의 존재를 원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³⁴⁾ 또한 2002년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간 영토 및 경계획정 분쟁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보더라도 20여년이라는 기간은 ‘권원의 역사적 응고’를 판단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 할 것이다.³⁵⁾

둘째, 북방한계선을 남북기본합의서로 합의된 불가침선으로 보는 견해의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남북기본합의서나 그 부속합의서에서 “해상불가침선”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구 교수는 물론 해상에서도 휴전협정 성립 이래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은 존재하므로 대체로 북방한계선을 남북한 간 해상경계로 정하면 될 것이지만, 해상경계선은 분명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협의해야 할 잠정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상 장차 남과 북이 협의하여 확정시킬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지금 북한이 닦고 있는 북방한계선이 아니라는 것이다.³⁶⁾

셋째, 실효적 지배(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i) 주권의 행사가 평화적일 것, ii) 주권의 행사는 실제적일 것, iii) 주권행사나 표시는 주권에 유효 권원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것, iv) 주권의 행사나 표시는 계속적 일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³⁷⁾ 그러나 서해북방한계선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특히나 현재 남북은 정전협정의 통한 정전상태이지 평화상태가 아니며, 더욱이 1999년과 2002년의 교전상태는 평화적인 주권의 행사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전쟁수역이라는 것은 본래 해군작전수역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34) 김영구, “북방한계선(NLL)과 서해교전사태에 관련된 당면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STRATEGY 21』, 제9호(2002), 25쪽; 이장희, 전제논문, 42쪽.

35)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이석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파주: 집문당, 2007), 97~107쪽 참조.

36) 김영구,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과 평화 정착방안”, 『독도, NLL문제의 실증적 정책분석』(부산: 다솜출판사, 2007), 230~231쪽.

37) 정갑용, 주문배,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5), 21~24쪽.

것으로 이해된다. 해군작전수역이란 넓은 의미에서 교전함대가 합법적으로 전개되고 궁극적으로 적대행위가 일어나는 그러한 해역의 집합체로서 추정된다.³⁸⁾ 즉, 전쟁법상의 교전구역의 해상구역으로서 교전국 쌍방이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의미를 차용할 경우,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은 공식적인 교전구역화되며, 이는 북방한계선을 실효적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는 논거로 합당치 않다고 본다.³⁹⁾

(2) 현존경계 부정설

현존경계를 부정설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첫째, 북방한계선이 유엔사의 자기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였던 것은 사실이나 해상군사분계선은 어찌됐든 정전협정의 시행상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히 압록강 하구 지역으로부터 유엔군 측의 우세한 해상봉쇄 세력을 육상군사 접촉선 까지 끌어내려야 했던 한국전쟁의 휴전이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유엔군 사령관의 일방적 조치로 설정된 북방한계선으로 비로소 확정되게 된 것이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당시 압록강 하구로부터 서해 지역에 이르기까지 북한측에는 해상군사력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유엔군 사령관의 일방적인 조치는 쌍방의 합의된 조치와 결국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⁴⁰⁾

둘째, 북방한계선이 봉쇄를 금지하는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불법이라고 하는 주장은 어떤 시각에서는 설득력이 있으나, 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의 북한이 관할해온 연해 구역은 해주만에서 장산곶에 이르는 좁은 수역은 외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봉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⁴¹⁾

셋째, 북한의 묵시적 승인이나, 한국 측 관할권 성립의 근거로 주장되는 실효적 점유와 응고의 원리에 대한 리영희 교수의 비판은 대체로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북한 해군함정의 빈번한 북방한계선

38) 김현수, “국제법상 전쟁수역의 법적 지위”, 『해양전략』, 제89호(1995), 123쪽.

39) 최진모, 전제논문, 40쪽.

40) 김영구,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24쪽.

41) 상제논문, 25쪽.

침범사례는 이러한 실효적 현상의 확정이나 응고를 저지하는 최고나 소멸 시효의 중단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은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서 있는 기초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⁴²⁾

넷째,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북한 측 남북회담 대표들의 논리보다도 치밀한 구성이라고 일단 인정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규범력을 도외시 하고 있는 논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⁴³⁾

2. 북측의 입장 및 검토

가. 북측의 입장

북한은 군사력우위의 확신 속에서 197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해북방한계선 월선 등 집중적 도발을 감행하는 ‘서해사태’를 유발하였다. 이어 19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 김풍섭의 발언에 의하면,

정전협정의 어느 조항에도 서해 해면에서 계선이나 정전해역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의 서해 6개 도서를 포괄하는 수역은 북한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수역이다. 그리고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ㄴ목의 해석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의 서쪽 연장선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그 북쪽은 우리의 ‘연해’이다. 따라서 당신측은 정전협정의 요구에 따라 해군함선과 간첩선을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키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하며, 앞으로 서해의 우리 측 연해에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에 드나들려 하는 경우에는 우리 측에 신청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2) 상계논문.

43) 상계논문.

라고 하였다.⁴⁴⁾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특히 제13항 ㄴ목 단서 말미에서 “상기 경계선이남에 있는 모든 도서는”이라는 문구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을 하나의 “경계선”으로 지칭하고 있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9년 6월 서해상에서 연평해전을 일으킨 북한은 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유엔사와 북한군간 제9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방한계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점이 포함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제시⁴⁵⁾하였다. 또한 해상경계선 문제를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하고자 주장하는 한편, 해상경계선 문제를 토의할 전문가 및 군사관계자를 포함한 북·미·남 실무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북방한계선을 준수해야 하며,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할 사항이라고 대응하고 북측 제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북한은 그 해 9월 2일에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북방한계선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상 군사경계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편, 동 수역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1953년 한국 정전협정의 해석에 관한 종래의 입장을 대체로 반복하는 것이었으나 남북간 서해 해상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제의가 나타나고 있고 이 제의의 내용은 종래의 북한 측이 남북한간 해상경계로 주장해온 내용과는 다르게 변경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로서 우리가 주목해 두어야 할 점이라고 할 것이다.⁴⁶⁾

44) 김영구,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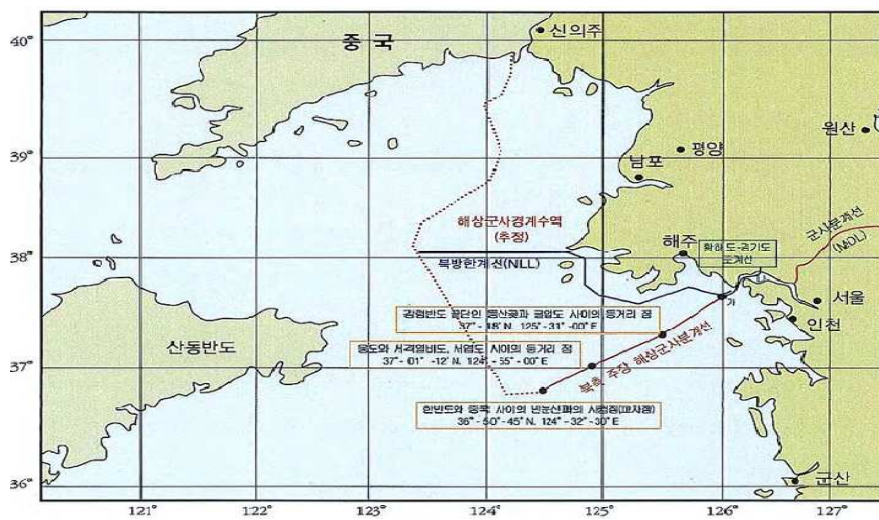
45) 북한 측 새로운 해상경계선 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군측이 제시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주어진 선인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을 연장한 가점과 우리 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미군측 관할하의 섬인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 북위 37도 18분 30초, 동경125도 31분 00초. 그 다음 우리 측 섬인 옹도, 미군측 관할하의 섬인 서격렬비도, 소엽도 이 사이의 등거리점 북위 37도 01분 12초, 동경 124도 55분 00초, 그리고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 북위 36도 50분 45초, 동경 124도 32분 30초를 지나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경계선까지 연결한 선…” 이라고 하였다. 상계논문, 8쪽.

2000년 3월 23일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공포하였다. 여기에서 북한은 서해 5개 섬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으로 출·입항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하여 모든 미군함정, 민간선박 통항은 제1, 2수로만 이용토록하고 통항질서 미준수시에는 무경고 행동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2년 6월 29일 서해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우리 해군함정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하였다.

<그림 3> 북한주장서해해상경계선(추정)



출처: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19쪽.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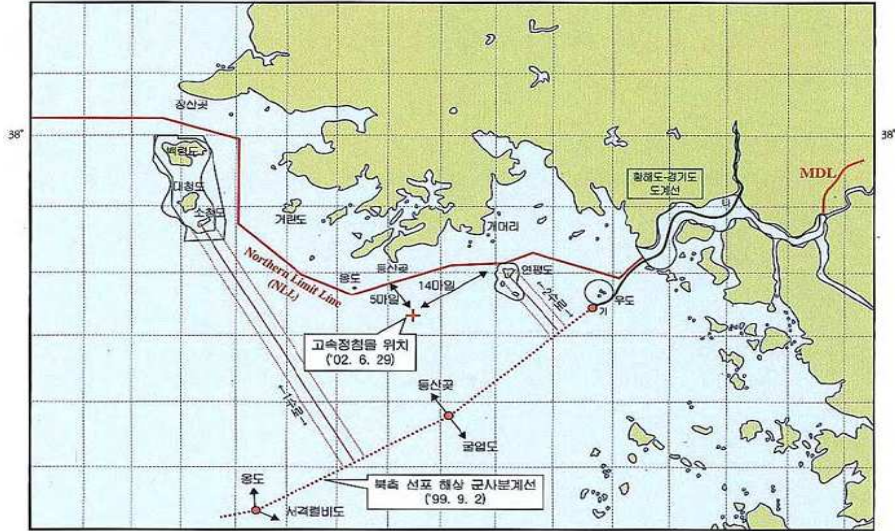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은 2002년 8월 소위 ‘백서’에서

첫째, “북방한계선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아니며, 미국이 자신들과 사전합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합법적인 선”이고,

둘째, “북방한계선은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의 화근”이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6) 상계논문.

<그림 4> 북한 주장 서해 5개 섬 통항로



출처: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21쪽.

2006년 3월과 5월에 개최된 제3, 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은 북측과 남측의 당국이 주체가 되어, 서해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확정문제에 대한 협의를 강력하게 주장한데 이어 2007년 5월의 제5차 회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여 제기하였다.⁴⁷⁾

그동안 서해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북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⁴⁸⁾

첫째, 서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해상경계선 설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의 초보적인 요구마저 무시하고 유엔군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비법적인 선이므로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서해 해상경계선은 정전협정 관련 문제로서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간에 토의될 문제이며, 이를 위한 실무급 회담에 남한 대표도 포함할 수 있다. 현재 있지도 않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의 토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47) 국방부, 전게서, 10~12쪽.

48) 상게서, 13쪽.

<표 3> 북한의 북방한계선 관련 주요 발표

구분	북방한계선 관련 주요 발표 또는 조치
1952년 1월(휴전협상시)	영해 12해리 주장
1955년 3월	내각결의로 영해 12해리를 결정 (대외적으로는 미발표)
1955년 5월	북방한계선 근해 우리의 조업어선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영해'에서의 조업으로 정부 수산상 발 표
1973년 12월 346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정전협정 규정(13항)을 들어 황해도-경기도 도 계선 북서쪽 모든 수역을 자신들의 연해로 주장
1977년 7월	중간선에 기초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발 표
1999년 7월 21일 판문점 장성급회담	남북 등거리점과 대중국 중간점을 연결한 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제시하고 그 이북해역을 해상군 사통제수역으로 규정
1999년 9월 2일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발표
2000년 3월	서해 5개 섬 통항질서 발표

출처: 박창권, “서해북방한계선과 남·북한 관계”, 9쪽.

셋째,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에 입각하여 황해도와 경기도 도경계선의 끝점으로부터 남북한 기점간의 중간선과 중국과의 반분선까지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 선의 북쪽 해상수역을 해상 군사경계수역으로 설정한다.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사될 것이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5도를 백령도·연평도·우도의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백령도와 연평도로 출·입항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하여 모든 미군함정과 민간선박은 동통항로만 이용하여 출·입항할 수 있다.

나. 북측 입장의 검토

(1) “북방한계선 비법적인 선”이라는 주장 검토

북한의 첫 번째 주장, 즉 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법적인 선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① 정전협상 당시 해상경계선이 북측의 요구에 의해 설정되지 못하였고, ② 1973년까지 전혀 이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③ 북한도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분명히 인지·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으나 그들 자신이 지난 50여 년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준수해 왔다는 엄명한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⁴⁹⁾이라 할 것이다.

제2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지 못한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다.

1951년 12월부터 1952년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연해수역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은 당시의 국제적 영해 관행에 따라 3해리를 주장했고, 유엔군에 의한 해상봉쇄를 우려한 공산군 측은 12해리를 주장했다. 유엔군 측은 해상봉쇄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나, 공산군 측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관련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고 유엔군 측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결국 해상경계선에 관한 규정이 정전협정에 포함되지 못한 채 합의되었다. 당시 황해도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의 해역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던 유엔군 측은 38도선 이북의 주요 도서로부터 철수함은 물론 38도선이남 해역에서도 전략도서인 서해 5도를 제외하고 황해도 육지와 근접한 도서 통제권을 북한에게 양보하였다.

정전협상 당시 군사분계선은 쌍방 군사력의 접촉선이 기준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설정된 것이다. 해상에서 군사력의 접촉선은 유엔군이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북한측 해안선이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제15항의 이행을 위해 유엔군은 북방한계선까지 해상군사력을 철수하는 양보 조치를 취한 것이다.

49) 상계서, 14쪽.

북방한계선이 비록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되었지만 남북 군사력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고 이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선이었다. 북한으로서는 북방한계선이 울타리의 역할을 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유엔군의 간접보호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⁰⁾

북한은 1973년 이후 간헐적인 북방한계선의 침범행위를 북방한계선에 대한 ‘이의 제기’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침범’과 ‘국가적 의사표시’를 혼동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타국 영역에 대한 무력도발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국가적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국제공동체에서 국제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북방한계선이 북한측 통보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 당국에 정식으로 통고하였다는 한국 학자들의 일부 주장이 있으나 유엔군 사령부 당국도 부인하고 있고, 입증되지도 않았으며 확인할 수도 없다.⁵¹⁾

그러나 북방한계선이 북한측에 정식 통보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북한측에 통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의 단적인 증거는 1959년 11월 30일에 발간된 『조선중앙년감(국내편)』에서 북한 스스로가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⁵²⁾⁵³⁾

(2)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미국과 북한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주장 검토

1999년 제9차 판문점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은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미 3자 실무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이들의 제의에서 중요한 요점은 서해 해상 경계선 문제는 정전협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전협정의 문면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주체가 된 협상에서 이

50) 상계서, 17쪽.

51) 김영구,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11쪽.

52) 국방부, 전계서, 18쪽.

53) 이에 북한 측 시효가 지난 출판물이라며 그 효력을 부인한다. 류완수, 전계논문, 32쪽 참조.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실무급 대표를 미·북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 북한은 해상경계선 문제가 미북간 장성급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부칙, 제61항에서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사령관들의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해상경계선 문제는 정전협정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전협정의 문면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장성급회담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제4장에서 논의할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⁵⁴⁾와 관련되기에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조약당사자(party)와 서명자(signatory)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한 오류이다. 조약 당사자란,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게 되는 국가”를 의미하는 반면, 조약 서명자는 “이러한 당사자를 대표하여 조약을 서명하는 사람”으로, 두 개념은 우선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또 조약 당사자와 조약 서명자의 국적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다.

보통 정전협정이란 군사적 사항에 국한되는 협정으로 교전자가 협정의 당사자가 되며, 교전 쌍방의 군사령관이 교전자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다. 한국전의 교전 당사자는 한국과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해 참전한 16개국인 일방이 되고, 북한과 중국이 적대 진영을 이루었다. 유엔안보리결의는 한국을 돕고자 참전한 16개국을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구성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그 사령관을 임명케 해 지위체계를 통일시켰다. 또 한국은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을 통해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은 한국과 참전 16개

54) 북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남한이 아닌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의 체결 당사자 역시 미국으로 보고 북-미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길재,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연구』, 제5호(1996), 170쪽.

국을 지휘했고, 정전협정도 이들 국가들을 대표하여 교섭, 서명했던 것이다. 이러한 단일 지휘 체계를 감안하며, 정전협정에는 유엔군 사령관만이 서명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연합군을 구성한 경우, 정전협정은 연합군 사령관이 관련국을 대표하여 서명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경우 협정은 모든 관련국에 적용된다. 한편 북한 및 중국은 별도의 단일 지휘체계를 구성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전협정에도 동시에 참여, 서명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정전협정은 엄격히 말해 한국과 참전 16개국 이 일방 당사자가 되고 북한과 중국이 타방 당사자가 된다고 하겠다.

둘째, 정전협정 체결 후의 추후관행을 검토해 볼 때도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1953년 7월 협정체결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전협정은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적 문서로 남북한에 직접 적용되어 왔다. 정전협정은 전문에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한국(Korea)에서의 교전쌍방”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교전 당사자로 이 협정의 적용 대상임이 협정상에 분명히 규정된 셈이다. 조약법 원칙상, 조약은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제3국이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제3국이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⁵⁵⁾, 한국정전협정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이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바로 한국이 협정의 당사자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이 협정에 구속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또 북한이 지금까지 한국의 정전협정 위반을 항의한 경우가 많은 데, 이는 한국이 협정 당사자로 협정에 구속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한국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협정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전협정 체결 후 개최되었던 정치회의에 한국이 참가했었다는 사실도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임을 입증해 주는 근거가 된다. 정전협정 제60항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의를 정전 후 3개월

5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5조.

내에 소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치회의는 정전 후 최종적 평화를 타결하기 위한 강화회의 또는 평화회의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1954년 4월 개최된 “제네바 회의”에 한국은 참전 16개국과 함께 교전 당사자로 참가했으며 한국의 참가에 아무런 반대도 없었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전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논의하는 정치회의 당사자 자격도 없을 것이다.⁵⁶⁾

“적대 쌍방사령관들의 상호 협의”의 주체에 한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한국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의 논리보다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 측이 주장하는 “당사자 해결의 원칙”은 한국 정전협정의 해석과 시행의 과정에서 국제법상 기교적인 어떤 다른 규범에도 우선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적 규범이라 할 것이다.⁵⁷⁾

(3) “조선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검토

북한측이 발표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73년 서해사태 이래, 1993년도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의 연장선과 같은 관념적인 선”이 서해5도와 북한 측 귀속 도서군을 구획할 수 있는 이른바 분계선이 될 수 없다는 논리적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⁵⁸⁾

그러나 이 주장의 내용은, 첫째로 정전협정의 규정상 근거가 없다. 정전협정 첨부지도(제3도)에는 도계선이 다만 한국 서부 연해도서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일 뿐, 아무런 의의도 없고, 또한 다른 의의도 첨부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협정 및 첨부지도상 위치를 근거로 북한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가점의 북·서쪽 전체를 자신들의 통제수역이라고 하는 주장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또한 북한 측 스스로가 지금까지 주장해 오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⁵⁹⁾ 그 정당성을 인정해

56) 백진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42권 2호 (2000), 282~284쪽.

57) 김영구,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28쪽.

58) 상계논문, 26쪽.

59) 북한은 1973년 이래 영해, 연해, 해상 군사통제구역으로 표현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들의 관할 범위를 계속 확장하는 주장을 해왔다. 북한의 이 같은 주

줄 수 없을 것이다.⁶⁰⁾

둘째로 북한은 영해 및 해상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근거가 취약하다.

우선 국제해양법상 국가 주권의 배타적 관할 범위는 내수와 영해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밖의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경제활동 및 보건 등 제한된 관할권 행사만 인정된다.⁶¹⁾ 그러나 북한은 1977년 8월에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지 않은 해상 군사경계선을 발표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또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는 자체 영해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서해 5도 역시 다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섬으로 분명히 인정된다. 국제법상 12해리의 영해 관행을 인정할 경우 서해5도와 북한지역 사이는 모두 24해리 이내이므로 북한과 서해 5도 사이의 중간선에서 양쪽의 해상경계선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서해 5도가 자신들의 연해안에 있다거나 해상 군사 통제구역 안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2000년 인민군 해군사령부 명의로 발표된 서해 5도에 대한 “통항질서”는 1999년 9월에 북한이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선포조치가 갖는 기본적인 모순과 오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 검토한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에 대한 비판들이 그대로 이 서해 5도에 대한 “통항질서” 선언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⁶²⁾ 그러므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이들 지정통항로나 연안통항구역들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한국에 대해서 또는 미국 등 한국정전협정의 기타 당사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 해역을 통항하는 다른 어떤 법주체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효력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장은 서해 해상경계선에 대한 그들의 입장과 견해가 일관성이 없으며 분명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국방부, 전게서, 19~20쪽.

60) 김영구, 상계논문.

61) 이한기, 『국제법강의』(서울: 박영사, 2006), 2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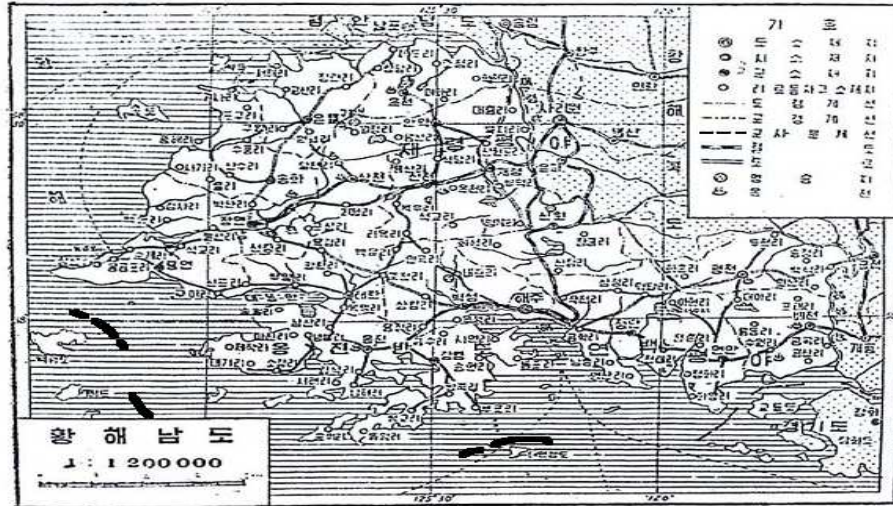
62) 김영구, 상계논문, 27쪽.

3.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 준수사례

가. 1959년 조선중앙년감(국내편)

북한의 관영통신인 조선중앙통신사가 1959년 11월 30일 발행한 「조선중앙년감(국내편)」에서 북한 스스로가 현 북방한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림 5> 조선중앙년감(1959년 조선중앙통신사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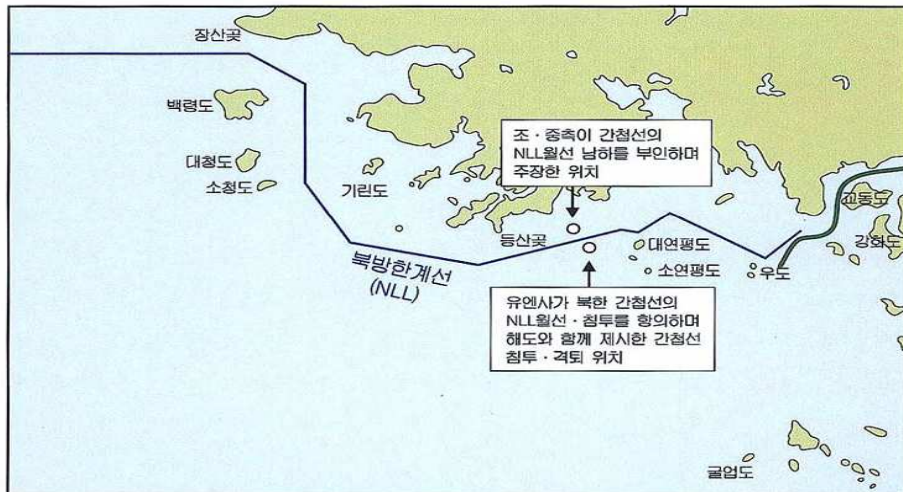
출처 :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18쪽.

나. 북한 간첩선의 NLL 월선·침투 및 격퇴위치 관련 양측주장

1963년 5월 11일 서해북방한계선을 월선하여 연평도 서방으로 침투한 북한 간첩선을 우리 경비함정(로켓포함 311함)이 격퇴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개최된 군사정전위 제168차 회의(1963년 5월 17일)에서 유엔사측은 북방한계선이 그려진 지도를 제시하며 북한 간첩선의 침투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간첩선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사격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한 함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간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는바, 이는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전제한 것으로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림 6> 북한 간첩선의 NLL 월선·침투 및 격퇴위치 관련 양측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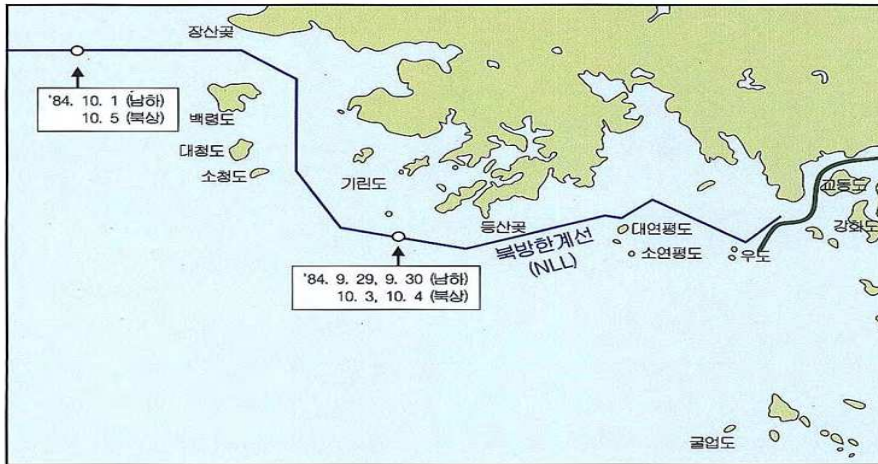
출처: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28쪽.

다. 북한 수해물자 수송선박과 우리 호송선단의 상봉위치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북한 적십자사가 수해물자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북측 수송선박 10척과 우리 호송선단이 연평도 및 백령도 서방 NLL선상에서 상봉하여 호송하였다. 수송선박의 호송임무를 NLL선상에서 인계·인수함으로써 북한은 NLL이 남북간의 실효적인 해상경계선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호송선단은 경비함정 등 군함으로 구성되므로 정전협정 및 국제법상 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⁶³⁾

63) 국방부, 전게서, 29쪽.

<그림 7> 북한 수해물자 수송선박과 우리 호송선단의 상봉위치



출처: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31쪽.

라. 한국의 비행정보구역변경(안)

한국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대구 비행정보구역 (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이 1993년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서 북방한계선에 준해 조정된 한국의 비행정보구역변경(안)이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월 발효 시까지, 그리고 발효 이후에도 북한 측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비행정보구역이 해당국가의 영토와 영해를 규정하는 의미는 없으나, 조난항공기에 대한 탐색 및 구조임무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해당국가의 주권에 미치는 구역을 따라 설정되는 것이 관례임을 감안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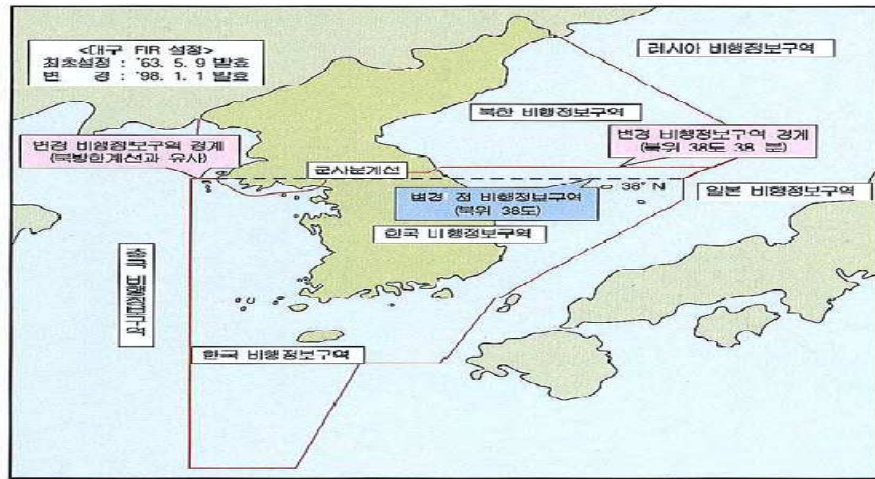
마. 북한 조난선박 및 승조원 인계시 상봉위치

2002년 6월 20일 연평도 서방에서 기상불량에 의한 항로착오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월선한 북한선박 1척(승조원 10명, 전마선 2척 포함)을 나포했을 때에도 연평도 서방 18마일 서해북방한계선상에서 북측 경비정을 조우하여 북측에 인계하였고, 2002년 12월 11일 대청도 북방에서 좌초된 유

64) 상계서, 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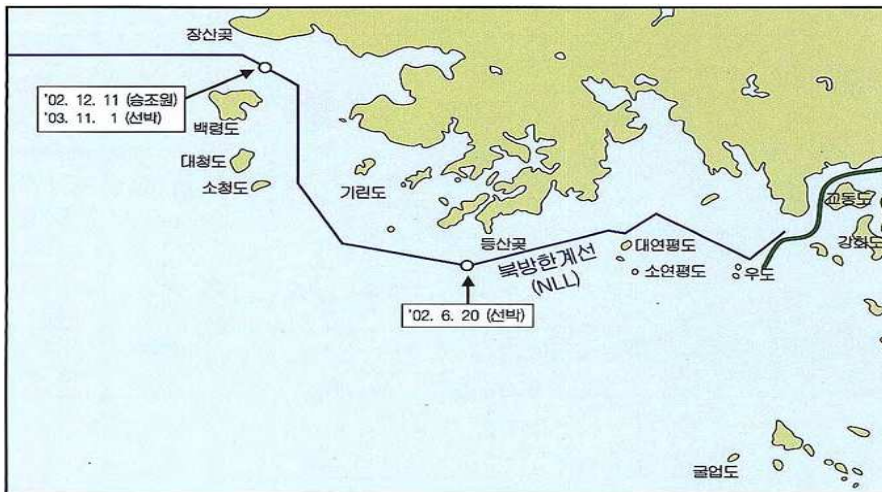
류바지선(삼광5호)역시 수리 후 서해 북방한계선상에서 북한에게 인계한 사례는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8> 비행정보구역 요도



출처: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30쪽.

<그림 9> 북한 조난선박 및 승조원 인계시 상봉위치



출처: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31쪽.

제3장 서해북방한계선의 법적 성질

제1절 정전협정과의 관계

1. 정전협정의 개념

좁은 의미에서 정전이란 국제기구의 관여 또는 중재 하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중대장 이상의 단위부대 지휘관에 의하여 전투행위의 일반적 종결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없이 체결되기도 하는 국지적·일시적 전투행위의 정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법상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⁶⁵⁾ 한국정전협정은 ‘정전’이라는 명시적인 협정의 명칭과 ‘군사적’인 목적으로만⁶⁶⁾ 체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법상의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측면에서 국제법상 정전협정에 부합한다. 하지만 한국정전협정이 군 총사령관들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며, 그 효과가 국지적인 효과를 갖지 않고 교전당사자의 전 전투원과 전 전선에 대하여 일반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전협정에 꼭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에 비하여 휴전이란, 교전당사자간의 전반적인 적대행위의 중지를 말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다. 휴전협정은 교전당사자의 정부 또는 군의 총사령관만이 체결할 수 있으며, 특별한 협정상의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상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한국정전협정은

65)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서울: 일조각, 2007), 1019쪽; 이한기, 전계서, 826쪽.

66) 한국정전협정의 서문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동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군사적 목적만을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점, 국내법상의 비준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휴전협정에도 꼭 들어맞지 않는다.⁶⁷⁾

2.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가. 법적 성격

한국정전협정은 협정의 당사자와 효력의 범위를 고려하면 휴전협정적이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체결된 것이 아니고 협정의 당사자에 국제기구로서 유엔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⁶⁸⁾, 그리고 교전의 양당사자 국내법상 비준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휴전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정전협정은 군사적 측면에서만 현재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정치적 의미를 갖는 휴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의 체결은 후속적인 제네바정치 회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⁹⁾ 정전협정의 서문은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정전협정의 제62조는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전협정의 잠정성과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67) 최철영,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한국정전협정의 효력”, 『성군관법학』, 제16권 제2호(2004), 484쪽.

68) 이병조, 이중범 교수는 유엔의 관행상 유엔의 기관의 조치로서 적대행위가 정지되는 것을 정전(truce)이라 한다. 이병조, 이중범, 전게서, 1018쪽.

69) 당시 미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의 결계를 받은 1951년 5월 16일자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정책 건의서는 한반도에서의 전투행위의 중지필요성과 관련하여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구분하고 정전협정회담에서는 군사적 목적만을 다루어야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기본방침은 1951년 6월 30일자 ‘일반지침’으로 하달되었다. 김보영, “정전회담쟁점과 정전협정”, 『역사비평』, 2003년 여름호, 22쪽.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휴전협정으로 볼 수 없다.

휴전협정의 경우 그 정치성과 대표성 그리고 국내법상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휴전의 장기화로 인한 사실상의 평화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휴전협정만으로 사실상의 전쟁 종료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지만, 정전협정의 경우 별도의 평화협정 없이 그 자체로 평화상태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문서가 될 수 없다.⁷⁰⁾

나. 정전협정의 실효성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가장 준수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은 군사분계선의 위치에 관한 제2항이다. 북한은 1996년 4월 비무장지대 유지관리의무 포기선언에서도 군사분계선 자체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비무장지대 내 적대행위금지와 관련된 제6항의 규정도 상호간에 준수되는 규정이다. 적대 쌍방 사령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연안도서에서 해상 군사력을 철거하되, 서해 5개 도서는 유엔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는 제13항 ㄴ목은 결국 당해 도서의 남한관할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북한 측 이의가 제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도 준수되고 있다.⁷¹⁾ 또한 제13항 ㄷ목은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비행장을 건설하고 유지한다는 규정이다. 유엔사측은 이 조항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헬기장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결국 정전협정의 내용 중 중요사항으로서 쌍방간에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규정은 군사분계선에 관한 제2항과 비무장지대 내 적대행위금지에 관한 제6항, 연안도서의 관할권에 관한 제13항 ㄴ목과 ㄷ목정도이다.⁷²⁾

70) 최철영, 전계논문, 484~485쪽.

71) 북측이 2000년에 발표한 서해5개 섬 통항질서 및 2006년 제4차 남북장섭급회담에서 김영철 단장의 제안 발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김영철 단장의 발언은 중앙일보, 2006년 5월 17일자(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295697, 검색일자: 2008. 3. 25)

<표 4> 정전협정의 기능유지 조항 분석표

조	항	내 용	비 고
1조	1	비무장지대 설치(쌍방2km)	비무장지대 자체는 유지되나 단, 양구군 해안면과 화천지역에서 남북 쌍방 1km 등, 여러 곳에서 상호위반
	2	군사분계선 위치	
	6	비무장지대 내 적대행위 금지	전반적으로 준수(단 단발성의 위반사례는 존재)
	11	정전협정 감시·감독 관련인원 비무장지대 내 이동 보장	
2조	13	상대지역 연안도서, 해상의 군사력 철거 서해 5개 도서 유엔군 통제규정	
	17	정전협정 집행 책임: 조인자와 후임사령관	법적 책임 유지(단 실질적 협력 전무)
	25	군정위 본부구역 위치(판문점부근)	
	35	군정위, 상방 사령관에게 정전협정 수정·증보에 대한 건의 제출	
	49	중감위, 군정위에 통신대책 지원·보장	
4조	61	쌍방 사령관 합의하에 수정과 증보	합의 자체만 유지
5조	62	정전협정 효력기간: 수정·증보 또는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정에 의거	
	63	효력발생(1953.7.27, 22:00 이후)	

출처: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81~85쪽.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에서 정전협정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72) 전계논문, 492쪽.

그러나 정전협정의 상당수 조항들이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능이 정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정전협정이 실효되었다는 결론은 나올 수는 없다. 정전협정은 제61항에 따라 상호(폐지)합의를 한 경우나 또는 제62항에 따라 새로운 대체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만 실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전까지 정전협정은 엄연히 살아있는 법적 문서라고 할 것이다.⁷³⁾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전략이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정전체제를 계속 붙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자세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이미 시대가 그러한 수구적 입장의 고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게 된다.⁷⁴⁾

3. 정전협정상 경계 획정

서해북방한계선 문제에 있어 우선 적용해야 하는 규정은 유엔해양법 이전에 합의되어 특수 관계를 형성한 1953년 정전협정이라 할 것이다. 1953년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비교적 치밀한 규정을 갖춘 협정으로서 1950년대 이후 전쟁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다른 많은 휴전합의의 모범이 되어왔다.⁷⁵⁾

북방한계선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은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3항 ㄴ목과 별첨지도 「한국 서부 연해도들의 통제」에 명시된 부속문구 (주1) 및 (주2) 그리고 제2조 제15항이라 할 것이다.

가. 제2조 제13항 ㄴ :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73)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2002), 108쪽.

74) 상계서.

75) 김영구, “북방한계선(NLL)과 서해교전사태에 관련된 당면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18쪽.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이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도서”라는 용어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 중에서 백령도(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 들을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의 군사 통제 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도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

- 나. 별첨지도 (주1) : 상기 경계선(가-나 선)의 목적은 다만 한국 서부 연안 섬들의 통제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 선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 한다.
- 다. 별첨지도 (주2) : 각 도서군 들을 둘러싼 장방형의 구획의 목적은 다만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 하에 남겨두는 각 도서군 들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방형의 구획은 아무런 다른 의의가 없으며, 또한 이에 다른 의의를 첨부하지도 못한다.
- 라. 제2조 제15항 :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정전협정 제13항 ㄴ의 본문은 “정전협정 발효 후 10일 이내에 쌍방의 군사력은 상대방의 연안 도서와 해면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본문은 전쟁 수행이후 점령지 처리의 방식 중 “전쟁개시 이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이른바 status quo ante bellum⁷⁶⁾ 조항이다.⁷⁷⁾

그리고 여기서 “연안 도서와 해면”이란 단서에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정전성립 당시 점령하고 있더라도 한국 전쟁 발발이전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도서와 그 영역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대로 해석하면 북위 38도 선 이남의 서해지역 해면과 황해도의 연변에 있는 모든 도서 즉 서해 5개 도서는 물론이고 마합도, 창린도, 기린도, 비엽도, 순위도 등 모든 도서에서 공산측은 철수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를 제외한 마합도, 창린도, 비엽도 및 순위도 등의 섬들로부터의 철수 의무가 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들 철수의무가 해제되는 섬들의 범위를 지목하기 위해서 동 제13항 ㄴ목에서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의 북쪽과 남쪽에 있는 섬들”중의 5개 도서군을 “제외한 모든 도서”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단서는 전쟁 수행이후 점령지 처리의 방식 중 “전쟁 수행과정의 결과적 상태를 참작”한 이른바 uti possidetis조항⁷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제13항 ㄴ목 본문과 ㄴ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정전의 발효를 위한 군사접촉선이 조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 군

76) ‘Status quo ante bellum’이라 함은 전쟁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협상과정 중에는 북한과 중공에 의해 주장되었다. 즉 북한과 중공은 한국전쟁 발발이전인 1950년 6월 24일의 상태인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의 분단 상태로의 전전회귀(戰前回歸)를 주장하였으며, 이는 정전협정 진행당시 불리한 전세에 있었던 북한으로서는 전전상태의 회복을 통해 38도선에서의 정전으로 기존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최진모, “서해상 남북한간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2003, 17쪽.

77) 김영구,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14쪽.

78) “네가 가지고 있는 대로 점유를 계속하라”[ita possideatis(as you possess, so you may possess)]라는 의미를 가지는 로마법상의 부동산 점유보호원칙이었다. 國際法學會編, 『國際關係法事典』(東京: 三聖堂, 1995), 63쪽.

사접촉선이 정전선이 된다 할 것이다. 적대하고 있던 쌍방의 군사행동을 정지시키는 정전협정에 있어서 육상이건 해상이건 이러한 정전선이 성립되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적대 군사행동의 정지를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은 조리상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정전선이 정전협정상 실제로 명기되었는가 여부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이 정전선은 정전협정에서 필수적 요소로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⁷⁹⁾

정전협정 제13항 ㄴ목의 본문과 단서로 결정되어 지는 양측의 군사접촉선을 보면, 유엔군 측의 군사통제범위는 서해 5도와 비무장지대 남쪽에 있는 모든 도서이며, 북한 측 군사통제범위는 “서해 5도를 제외한”,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의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이다.

이러한 양측의 군사통제 범위의 경계로서 군사접촉선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군사접촉선이 정전선으로 되는 것이다.⁸⁰⁾

정전 발효 직후 북한은 유엔군 해군 세력이 서해북방한계선 이남으로 철수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 이북 지역을 반사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사실상 1953년 당시 유엔군 해군 세력에 필적할 해상군사력이 없던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이 해역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하여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의 정전체제에 있어서 양측의 해상군사력이 대치하는 군사접촉선으로 성립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군사접촉선이 정전선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해에 있어서 이 정전선은 결국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의 시행을 위해서 지정한 북방한계선과 같게 될 수밖에 없다.⁸¹⁾

결국 정전협정에 있어서 해상군사분계선의 합의는 제2조 제13항 ㄴ목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이 협정이 한국전쟁의 무력적 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교전당사자간의 협정이라는 기본적 전제 아래에서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의 과정에서 해상군사분계선에 관한 논리 필연적 내용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⁸²⁾

79) 상계논문, 15쪽.

80) 상계논문; 국방부, 전게서, 16쪽.

81) 상계논문, 35쪽.

82) 김영구,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19쪽.

한국정전협정에 있어서는 제2조 제13항 ㄴ목에서 다소 모호하고 복잡하게 이 해상군사분계선의 결정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2조 제13항 ㄴ목의 본문에서는 status quo ante bellum의 기준으로 북한이 서해 연안 도서에서 철수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그 단서에서는 일종의 uti possidetis원칙을 적용하여 이러한 철수의무 중 일부를 해제한 것이다. 북한이 철수의무를 면제받은 다른 도서들과 유엔군 사령관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서해 5개 도서들을 구획하기 위한 구체적인 획선이 한국정전협정에 있어서 해상군사분계선이 되는 것이다.

해상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 규정에서 명시되어야만 했으나 한국정전협정에서는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누락되었다. 유엔군 사령부가 처음부터 명백히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측이 주장하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의 연장선”과 같은 관념적인 선은 양방의 관할 도서를 구획하는 경계선으로서 성립될 수 없다.

한국전쟁의 종결에 있어서는 특히 압록강 하구지역으로부터 유엔군 측의 우세한 해상봉쇄 세력을 육상 군사접촉선까지 끌어내려야 했던 특이한 상황에서 양방의 전투행위 중지선, 즉 해상군사분계선은 유엔군 사령관의 일방적 조치로 설정된 북방한계선으로 비로소 확정되게 된 것이다. 특히 정전당시 압록강 하구로부터 서해지역에 이르기까지 북한 측은 해상군사역량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유엔군 사령관의 일방적인 조치는 쌍방의 합의된 조치와 결국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⁸³⁾

정전이 발효되어 실시되고 난 뒤에 유엔군이나 북한 측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여 상대방 구역을 침해하면 정전협정 제1조 제6항 및 제2조 제15항 위반이 되는 것이다.⁸⁴⁾

83) 상계논문, 20쪽.

84) 이장희 교수는 북방한계선은 유엔군 측과 북한 측 상반된 의견차이로 정전협정에서 규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이장희, 전개논문, 39쪽.

제2절 남북기본합의서와의 관계

1.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및 성격

가. 의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어 1992년 2월 19일 발효 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첫째,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의 제도화’라는 기초를 이룩한 것이다. 즉, 합의서에 담긴 상대방체제존중, 내부분쟁 불간섭, 비방·중상중지, 파괴·전복행위금지 조항 등은 평화공존에 관한 원칙의 합의이다. 둘째, 타의에 의해 초래된 분단을 남북한이 자주적 노력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첫 결실인 동시에 분단 46년 만에 처음으로 책임 있는 쌍방간에 관계개선에 관한 합의를 창출한 것이다. 셋째, 군사적 측면에서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다섯째, 남북사이에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길이 트이고 통행과 통신시설이 연결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족적 유대감 형성과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⁸⁵⁾

나. 성격

(1) 조약으로 보는 견해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가 조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에 비추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85) 이장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천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 43권 제1호(1998), 228쪽.

첫째, 당사자간에 관한 요건으로서 조약의 합의는 조약체결능력을 갖는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져야 하며, 대통령, 외무장관 또는 적법하게 임명된 전권위임대표 등 그 조약 당사국을 적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조약체결권자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한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의사의 합치를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데, 1969년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조 제1항 a호에 의하면 조약이란 “국가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는 협의의 정의이고 광의로는 국제법주체간에 국제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합의를 말한다.⁸⁶⁾ 그래서 1986년의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조약이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복수 또는 단수로 작성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제법 주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받도록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협정이 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남북한은 조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당사자 능력을 갖춘 국제법상의 주체라 할 것이며,⁸⁷⁾ 동 합의서 전문이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선언한 것은 남측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인 대한민국과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관계로 북측의 입장에서는 ‘중앙적 법률상의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될것이고, ‘지방적 사실상의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최소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제법 주체인 교전단체 수준 이상은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⁸⁸⁾

둘째, 목적에 관한 요건으로서 조약의 목적과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이 합의서는 분석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접근시켜 통일을 성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국제 질서에 합당하고 이행 가능한 내용을 갖는 합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⁸⁹⁾

86) 이병조, 이중범, 전개서, 50쪽.

87) 김영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해양전략』 (1994), 106쪽.

88) 박용현,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법적 재조명”,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2001), 11쪽.

셋째,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 조약체결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북측이 합의서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해석을 들고 나오므로 의사표시 내용의 착오를 논의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으나, 합의서 채택의 과정이 공연히 공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의사표시의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⁹⁰⁾

넷째, 절차에 관한 요건을 검토하여 보면 남북기본합의서는 조약에 구속되는 데에 대한 동의에 흠결이 있었다고는 보지만 결론적으로 그 흠결이 동 합의서의 조약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⁹¹⁾

(2) 잠정협정으로 보는 견해

잠정협정이라 함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쌍방이 과도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맺는 약속으로, 국제법상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편의적으로 체결하는 잠정적인 협정을 말한다.⁹²⁾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를 잠정

89) 김영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107쪽.

90) 상계논문.

91) 동 합의서가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안보적 사항과 입법 사항들을 포함한 조약으로서, 또 필연적으로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약으로서 헌법 제60조 1하에 의거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동 합의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동서독기본조약과는 달리 남북기본합의서에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절차적 요건으로 명기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효시키기로 정하고 있으며, 더구나 동 합의서는 남북한의 관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내부적 특수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고, 남북한의 조약체결권자들이 동 합의서를 채택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 측으로 보면 헌법 제66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의 의무”에서 연유된 정치행위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헌법 제60조 1항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비준·재가하여도 그것은 결정적인 절차적 흠결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 상계논문, 110~111쪽.

92) 고유환, “남북기본합의서 성격과 이행방안”, 『북한학보』, 제24호(1999), 127쪽, 각주 8.

협정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동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의 총리급 대표가 공개적으로 합의·서명한 문건으로서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한 잠정협정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동 합의서가 전문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합의서는 민족내부간의 특수한 합의로서 국제법적으로 상호 승인한 국가간의 조약과는 다르다는 것이다.⁹³⁾

(3) 신사협정으로 보는 견해

신사협정이란 정치가나 외교관들이 신의에 기하여 서로 언약하거나 자발적 이행을 담보하는 정책수행상의 약속을 말한다. 따라서 신사협정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지만 정치적 책임과 도의적 구속력을 수반하여, 위반 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및 정치적 비난을 받게 된다. 동 합의서를 이와 같은 신사협정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동 합의서의 내용이 잠정협정의 성격과 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현실 점검의 과정을 거쳐서 적실성과 실현가능성을 증명해 나가지 못하면 자기 충족적 예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4) 소결

우리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법의 규율을 받을 의도’ 내지 ‘국제법상의 법적 효과를 창출할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체결되었는바,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일종의 공동선언 내지 신사협정에 준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남북기본합의서가 동 합의서 제25조에 따라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북한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다만, 그 효력은 법적 구속력이 아닌 정치적 구속력 내지 도의적 구속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아무리 진지하게 취급되더라도 비구속적 협정이 법적 책임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93) 제성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 제2호 (1998), 84쪽.

다 할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배상 청구나 사법적 구제의 청구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구속적 협정이 준수될 필요가 없다든지, 당사국들은 그러한 협정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판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국가는 비록 비구속적 협정에 있어서 그 법적인 책임이나 법적 강제가 배제 되지만, 그 비구속적 협정을 통제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합리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⁹⁴⁾ 남북한은 7천만 민족구성원 앞에서 그 이행을 엄숙히 선서하였는바, 여느 국가간의 조약 못지않게 성실하게 이행 준수 되어야 할 문건이라고 하겠다.⁹⁵⁾

요컨대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과 효력은 이론과 실천간에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체결 당시 남북한간에 존재했던 정치적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기본합의서는 정치적 신사협정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전반적 성격을 규정하고 민족내부관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남북한 당국을 소프트하게 구속하는 연성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⁶⁾

2.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불가침경계선 규정

1992년에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⁹⁷⁾ 및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불가침관련 부속합의서」는 서해북방한계선의 법적 지위와 유효성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법리와 합의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서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남북불가침관련 부속합의서 제3장 제10조에서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

94) 김영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126쪽.

95) 제성호, 전계논문, 84~86쪽.

96) 제성호, “북방한계선(NLL)의 법적 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앙법학』, 제7집 제2호(2005. 8), 132~133쪽.

97)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참조.

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육상에 있어서, 남측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이며, 북측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군사분계선 이북의 구역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비무장지대에 관한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과 군사정전위원회에 있으며, 군사분계선 이북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은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및 군사정전위원회에 각각 있으나 이들 지역도 각각 쌍방이 관할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⁹⁸⁾

해상의 경우는 육상처럼 정전협정에 남북간의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북방한계선이 정전협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측간의 군사역량의 접촉선으로서 즉시 성립⁹⁹⁾된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간의 해상구역은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연장선으로 구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정전협정은 해상경계선과 관련하여 육지나 섬을 기초로 그 인접수역의 존중, 서해 5개 도서군은 한국측이 나머지 섬은 북한 측 관할할 것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실한 구체화는 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으로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조에서의 북방경계선은 서해의 경우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남북불가침관련 부속합의서 제10조 1문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해상불가침 경계선 내지 서해 5도 주변해역의 관할권 문제에 관하여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잠재적 분쟁이 현실적으로 표출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아직 미해결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⁰⁾

98)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에 대한 해석을 두고 학자들의 견해가 갈린다. 남북한이 지금까지 ‘각기’관할해 온 구역을 의미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기는 하나, 이장희 교수의 경우,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쌍방이 지금까지 공동으로 관할하여 온 구역’이고, 그 구역은 한강하구의 공동수역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장희, “서해5도의 국제법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 34~37쪽.

99) 김영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20쪽.

어찌되었든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부속합의서 제10조의 규정으로 해상경계선에 관한 내용은 명문규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해북방한계선을 기초로 하여 한국 측이 관할하여 온 서해 5개 도서군 수역은 이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 의하여 한국의 관할수역으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부속합의서 제10조에 의하여 해상경계선의 교섭 가능성을 열어 놓았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관할 수역이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절 소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현 한국정전협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전협정과 휴전협정 어느 것에도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다. 또 상당수 조항들이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능이 정지되어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전협정’ 그 자체는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전쟁의 당사자인 남북한은 정전협정의 구속을 현재도 계속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한의 현 상태는 전시 체제라 볼 수 있다. 또한 정전협정 제13항 ㄴ목의 본문과 ㄴ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군사접촉선과 이 군사접촉선으로 이루어진 정전선 역시 계속 유효하며, 남북한은 이 ‘정전선’을 준수해야 할 의무 또한 계속 유효하다 할 것이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46년만에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에 관계개선에 관한 합의를 창출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며,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부속합의서 제10조에서 규정한 해상불가침경계선 및 구역은 정전협정상의 정전선을 기준으로 하여 “쌍

100) 최종화, 김영규, “북방한계선과 서해5도 주변수역의 해양법문제”,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6권 1호(2004. 7), 114쪽.

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일종의 공동선언 내지 신사협정에 준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아닌 정치적 또는 도의적 구속력에 불과한 구속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동 합의서 제25조에 따라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발효되었으며, 그 이행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였는바, 성실하게 이행 준수되어야 할 문건이라 할 것이며 본 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서해북방한계선상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제1절 서해안 평화지대의 설정

1. 평화지대의 개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가장 혁신적인 발전 중의 하나는 다양한 지역적 레짐의 설립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세계 어떠한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승인되어진 비무장화, 비핵화 및 다양한 형태의 군사경쟁의 제한의 원칙과 같은 국제적 수단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한 것들은 일정한 지역을 군사화 및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평화지대(Zone of Peace; ZOP)의 설립을 위해 승인된 수단들 중 하나이다.

최근 평화지대의 개념은 1970년 비동맹정상회담(Non-Aligned Summit Conference)의 Lusaka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동맹회담은 유엔총회에 인도양평화지대선언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1971년 총회는 인도양평화지대선언에 대한 결의를 승인하고, 1986년의 남대서양평화협력지대선언을 승인하였다.

비록 1970년대까지 국제법상 평화지대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국가가 중립화할 수 있는 권리 및 중립국 혹은 중립지역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개념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는 전례가 없는 무기경쟁과 냉전의 시대로 기록되어있으며, 이 기간 동안 중립화 및 비무장에 관한 전통적인 규칙

과 유엔헌장원칙, 평화공존 5대원칙(Panch Shila), 반동선언 등에 기초한 새로운 규정들의 정형화가 시도되었다. 1971년 이후 총회는 새롭게 부각되는 법적 사항인 평화지대에 관해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것들은 유엔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힘의 경쟁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속 상충되는 한, 평화지대의 개념은 계속 중요할 것이다.

2. 해양에서의 평화지대 설정 사례

가. 인도양평화지대(Indian Ocean as Zone of Peace)

인도양평화지대의 개념은 1964년 10월, 카이로에서 열린 비동맹국가 수뇌회담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담에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 비핵화지대를 설립한다는 생각이 지지를 받았고, 이것은 인도양에서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외국군대의 철수로까지 확대되었다.

비동맹회원국 지역을 강대국들의 충돌과 경쟁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초기단계로서 대부분 비동맹국가들이 위치해 있는 인도양에 그러한 금지 조치를 한 것은 꽤 합리적이었다. 강대국들이 군사적 목적으로 인도양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바람이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는 주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¹⁰¹⁾

이듬해 스리랑카는 ‘인도양평화지대선언’을 제24차 회기의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유엔사무총장에게 발의 및 요청하였다. 스리랑카 유엔대사 Amerasinghe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인도양의 모든 공해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평화지대로 선언될 것입니다. 이것은 규정된 지역으로부터 방어나 공격을 위한 장비 및 모든 군사장비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전투

101) Subedi, Surya., *Land and Maritime Zones of Peac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 Clarendon Press, 1996), p.2.

장비를 운반하는 전함 및 일반선박은 운반할 권리를 행사할 것이나, 기계 및 기술적 결합이나 인도적 본성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정선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이유들을 제외하고는 잠수함의 해저지역 사용도 금지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 및 정보수집행위, 무기성능시험도 금지 될 것입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스리랑카 대사는 ‘단지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도 이 지역에서 제거’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역내 평화유지에 해안국가(littoral States)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제1위원회에서 이 주제가 논의되는 동안 강대국들은 이 제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1971년 12월 16일 61표의 득표로 결의 2832(XXVI)¹⁰²⁾로 승인되었다.

인도양평화지대 제안은 이전에 선언되었던 비핵화지대보다 복잡한 제안이다. 그것은 핵무기, 대량파괴무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경쟁관계속에서 시작된 모든 군사기지 및 장비도 포함한다. 이것은 4가지 관점에서 급진적인 것이다.

첫째, 이 선언은 인도양의 모든 지역을 단지 비핵지대화가 아니라 비무장지대와 연결될 수 있는 평화지대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선언의 제2조 b항¹⁰³⁾은 인도양의 제한된 비무장화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둘째, 그러한 전환은 상호조약보다는 유엔총회결의하에 이루어 질 것을 주장한다. 선언은 해양에서 평화지대를 설정하는 데 상호조약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물론 상호 협상은 필요하나 그러한 협상은 인도양

102) UN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on the Indian Ocean as a Zone of Peace*, Resolution 2832(XXVI), 16 December 1971.

103) *Ibid*, para.2(b). Elimination from the Indian Ocean all bases, military installations and logistical supply facilities, the disposition of nuclear weapon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ny manifestation of great Power military presence in the Indian Ocean conceived in the context of great Power rivalry.

평화지대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언급한다.

셋째, 이 선언은 평화적 목적의 공해 사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행자유의 원칙을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선언 제3조 a항¹⁰⁴⁾에 규정된 전함의 이동에 부과된 제한은 인도양 지역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한 항행자유의 원칙의 한정된 수정 수단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이 조항의 목적은 평화시 인도양에서의 충돌을 피하고, 전시에는 교전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제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 선언은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의 적용범위 확대 및 강화를 요구한다. 인도양평화지대선언은 군사적 목적으로 인도양을 이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그러한 사용에 새로운 제한조건을 부과한다.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공격적성격의 전쟁 준비뿐만 아니라 그러한 목적으로 공해나 공유지 성격을 가진 어떤 지역을 사용하는 것이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의 정도에 미치지 않는 한 규제하지 않는 반면에, 인도양평화지대의 주요원칙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i) 인도양에서의 주요 강대국의 주둔군의 규모 확대 및 증가 금지
- ii) 지역 내의 모든 군사기지, 장비 및 지역적 군참시설의 제거
- iii) 지역 내 핵무기 및 다른 대량파괴무기의 제거
- iv)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위한 전함, 군용기의 평화지대수역 이용금지

이러한 원칙들은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의 범위확장에 따른 새로운 요소들이다. 12해리 영해를 넘어선 지역의 수역에 있는 군사기지의 설립 금지, 모든 대량파괴무기의 제거 요구, 전함 및 군용기의 수역사용의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한 국제법 규칙은 없다. 이러한 규정들은 충돌방지를 위한

104) *Ibid*, para. 3(a) Warships and military aircraft may not use the Indian Ocean for any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independence of any littoral or hinterland State of the Indian ocean in contravention of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제3세대 규칙을 정형화하기 위한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시도들이 기존의 국제법 규칙들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시될 수 있다.¹⁰⁵⁾

나. 남대서양 평화협력지대(The South Atlantic As a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남대서양 평화협력지대(The South Atlantic As a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ZOPC) 설립 안은 1985년 유엔일반이사회에서 브라질 대통령 Sarney가 처음 제시하였다. 브라질의 이 발의는 트라텔롤코 조약¹⁰⁶⁾의 체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Sarney 대통령은 유엔일반이사회에서 “브라질은 남대서양을 평화지역으로 보존하고, 무기경쟁, 핵무기 배치 및 역외에서 시작되는 어떠한 형태의 대결로부터 이 지역을 보호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발언에 따라 브라질 외무장관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총회 41차회기(1986년)의 잠정의제에 ‘남대서양의 평화협력지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에서 그는 “국제공동체는 비핵국가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한 핵무기의 지역적 확산과 해군력의 질적·양적증대가 되풀이

105) Subedi, *op.cit.*, pp. 7~8.

106) 트라텔롤코 조약은 쿠바미사일 위기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중남미 비핵화지대화 구상에서 시작되었다. 즉, 중남미 지역을 비핵지대화 함으로써 쿠바가 소련 핵미사일 기지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62년 11월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가 ‘중남미 비핵화에 관한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하였으며, 총회는 1963년 11월 27일, 중남미지역의 비핵지대화를 권고하는 ‘결의 1911(XVII)’을 채택하였고, 1966년 5월 ‘중남미 비핵지대화 준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와 함께 조약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가 진행되었다.

1967년 2월에 조인되고 1968년 3월부터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1990년과 1991년, 1992년 등 세 차례 걸쳐 개정되었다. 31개조에 달하는 본 조약 외에도 두 개의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철기,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한국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1997), 33~35쪽.

되는 경향을 목격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대서양 평화협력지대 선언은 남미의 핵무기금지에 관한 트라텔볼코조약, 아프리카 비핵화에 관한 아프리카 단결기구의 선언과 같은 다른 유명한 발의에 지역적으로 부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제안된 사항들은 41차회기의 의제에 포함되었으며, 브라질 외무장관은 “우리는 군사화를 위한 수단, 무기경쟁, 외국주둔군의 군사기지 및 무엇보다 핵무기로부터 남대서양을 보전할 필요성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남대서양에서의 협력은 해양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해양법의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면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브라질의 제안은 토의에 참가한 국가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 124표로 채택되었다.

1986년 선언의 서문에 따르면, 남대서양 평화협력지대의 목적은 군사화 수단, 무기경쟁, 외국군대의 주둔 및 핵무기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고 역내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발전과 평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적 정체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다.¹⁰⁷⁾

그러므로 IOZP의 목적과 주요법적문제는 ZOPC선언과 매우 유사하다. 두 선언 모두 역내의 군사화를 중지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군사기지의 철수를 요구한다. IOZP와 마찬가지로 공유지의 성격을 가진 지역 내에서의 평화지대를 설립하고, IOZP가 지역 내에서 단지 핵무기와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만 요구했듯이, ZOPC는 남대서양에서 단지 반비무장 지역(semi-demilitarized zone)의 설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IOZP와 비슷하다. 다만, IOZP는 모든 선박의 평화적 통항은 금지하지 않은 반면, 어떤 임무를 수행중인 전함의 남대서양의 수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다.¹⁰⁸⁾

다. 지중해 평화협력지대(The Mediterranean As a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107) Subedi, *Ibid*, p,22

108) *Ibid*.

지중해는 가장 큰 반폐쇄해이며, 대서양과 흑해, 마르마라해, 홍해를 연결한다. 냉전기동안 지중해 19개국의 발전은 종종 서쪽진영과 동쪽진영 국가들의 관계를 반영할 만큼, 세계 정치 기후의 척도로 주시되어왔다.

3개의 대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중해는 몇 세기동안 국가들 간의 무역과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며, 현대에 와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매일 세계 곳곳으로 향하는 선박들이 통항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전략적 상품의 운송-특히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의 원유가 유럽으로 수송된다-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지중해지역은 중동전쟁, 구유고의 내전, 시드레만 지배분쟁, 그리스·터키 분쟁, 지브랄타의 영국과 스페인 분쟁과 같은 현대의 가장 복잡한 몇몇 문제들을 보여주는 현상이 되었다.

비록 지중해 국가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국과 관계를 맺고 있고, 몇몇 국가들은 비동맹 및 중립화를 선언했지만, 수많은 외국군대의 역내주둔은 지역의 평화, 안보 및 협력에 대한 공동의 접근 필요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켰고, 이러한 이해관계에 대한 지중해 공동체(community)의 설립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지중해의 일부 비동맹 국가들은 그들의 해안에서 해군함대의 철수효과에 대해 파악하면서, 지중해의 평화협력지대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 지중해 평화협력지대는 지역적 특성상 비동맹주의(Non-Aligned Movement; NAM), 유엔, 유럽 안보 및 협력에 관한 회의(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등에서 논의되었다.

(1) 유럽 안보 및 협력에 관한 회의(*th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에서의 지중해 관련 논의는 1973~5년 헬싱키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참가국들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지중해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시킬 방안을 찾고, 상호신뢰를 증가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지중해지역의 안보와 안정화를 증진'시키며, '평화, 지역 내 군사력의 제거, 안보의 강화, 역내의 긴장완화 및 협력의 범위 확장에 공헌할 목적을 가지고' 지

중해의 모든 국가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유지 및 증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의도는 1980~3년의 유럽 안보 및 협력에 관한 마드리드 회의에서 재확인되었으며, 1986~9년 유럽 안보 및 협력에 관한 비엔나 회의 결의문서에도 비슷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1990년 승인된 신 유럽을 위한 파리헌장은 지중해에서의 평화, 안보 및 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수정하였다. 파리헌장에서 ‘유럽안정화의 중요 요소로서 지중해에서의 안보 및 협력강화에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서약하고, 유럽의 각국들은 역내 지속적인 긴장조성에 관련 있음을 인식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한 실천 가능하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¹⁰⁹⁾

(2) 비동맹주의(*Non-Aligned Movement*)

비동맹주의(*Non-Aligned Movement*; NAM)는 이미 인도양의 평화지대 설립의 개념을 지지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1973년 알제에서 열린 제4차 비동맹주의 수뇌회담에서 지중해 평화협력지대 창설을 승인하였다. 이어 1976년 스리랑카에서 열린 제5차 회담에서는 지중해를 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중해 비동맹 국가들이 회의의 결정과 결의에 따라 공동으로 행동할 것이 요구되었다. 1979년 제6차 회담에서는 지중해 평화협력지대설립에 관한 5차 회담의 결정을 승인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 결정을 이행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1983년 제7차 회담에서는 지중해 지역에서의 무기경쟁을 금지하고, 대결과 긴장을 제거할 것을 천명하였다.¹¹⁰⁾

(3) 유엔

1981년 12월 9일 유엔일반이사회는 국제안보 강화에 관한 선언 이행에 관한 결의(*Resolution 36/102*)를 승인하였다. 이 결의는 지중해의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사항을 14, 15항에서 다루고 있는데, 14항에서는 ‘지중해를 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109) *Ibid*, p,27.

110) *Ibid*, p,28.

유엔사무총장의 1982년 7월 2일자 구상서(note verbal)에 의해 유고슬라비아는 지중해를 평화협력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승인하는 작업문서(working paper)를 제출하였고, 시푸르스, 그리스, 리비아, 몰타, 모리타리아 및 튀니지는 유고의 제안을 지지하면서 그 지역에서의 외국군대의 점진적 제거 및 최종 철수를 요구했다.

1982년 12월 6일의 결의로 일반이사회는 ‘지중해의 모든 국가 및 국민들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안보 상황의 설정 및 충분한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항을 의제에 포함하였고, 그 후 일반이사회는 이 사항에 대한 만장일치의 결의를 승인하였다.¹¹¹⁾

라.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ZOPFAN)정책은 동남아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정치·경제·사회체제들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적 질서를 창조함으로써 동남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정책은 동남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역외 강대국들(미국·중공·소련·일본)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시킴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ASEAN의 ZOPFAN 정책은 이 지역 국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비동맹 내지 중립외교노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데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ASEAN 회원국들의 비동맹중립노선에 대한 공동인식이 지역적 수준으로 확대됨으로써 ZOPFAN의 구상과 추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중립화 구상은 말레이시아의 T.D. Ismail Rahman의 소위 ‘평화계획’(peace plan)에서 최초로 제안되었다. 그는 1968년 1월 23일 동남아중립화를 위한 ASEAN국가들의 집단적 선언을 위한 시기가 성숙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11) *Ibid*, pp.29~31.

“동남아중립화가 효과적이려면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상호불가침조약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지금은 동남아국가들이 상호간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정부형태를 선택하거나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평화공존정책을 선언할 시기이다... 강대국에 의해 보장되는 동남아중립화는 강대국이 동남아를 강대국정치의 인질로 만들 공개적 개입에 대한 대안이다. 지역 국가들 간의 불가침 조약 체결은 자신들의 경계에 손상을 주는 무기경쟁에 대한 대안이며, 평화공존정책 선언은 이 지역에 증가하는 긴장과 파괴의 대안이다.”

이러한 그의 이념 가운데 필수적 요소들은 T.A. Razak정부에 계승되어 ‘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안’으로 수정되었다. 이 계획은 당시 정부의 이론가인 T.S. Ghazali Shafie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는데, 동남아국가들 스스로가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기초위에서 불가침조약을 지지하고, 상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소련·중국이 동남아시아가 그들 간의 갈등 혹은 강대국 야망을 위한 지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강대국들도 동남아시아의 중립유지를 위한 감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중립화와 ZOPFAN안은 말레이시아의 주도적 노력으로 발전되어 왔다. 말레이시아는 1970년 9월 루사카에서 개최된 제3회 비동맹외상회의에서 이 안을 정식으로 제안하여 지지를 받았으며, 동년 유엔창설 25주년 기념회의와 1971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연방회담에서도 일련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ASEAN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쿠알라룸푸르 선언¹¹²⁾을 채택¹¹³⁾하기에 이르렀다. 선언의 내용은 다

112) 쿠알라룸푸르선언(일명 ZOPFAN선언)은 1967년의 방콕선언(ASEAN창립선언)정신을 재확인 하면서 ZOPFAN안으로 구체화된 것이었다. 변창구, “ZOPFAN Policy of ASEAN”, 『효대논문집』, 제37집(1988, 8), 262쪽.

113) Subedi, *op.cit.*, p.108.

음과 같다.

“동남아시아의 중립화는 회구되어야 할 목표이고,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독립과 강제적, 사회적 행복에 불가결한 평화와 안정의 조건을 확보하려고 하는 동남아시아 제국민의 깊은 염원을 효과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면서 이에 선언한다.

- i)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및 태국은 동남아시아가 평화 · 자유 · 중립화지대로서,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외세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인식하며, 또한 그것에 대한 존중을 보증하기 위한 필요한 노력을 솔선해서 수행해야 한다고 결의한다.
- ii) 동남아시아제국은 제국의 힘, 단결 및 보단 긴밀한 협력에 기여할 협력범위 확대를 위한 공동노력을 수행한다.”

동남아시아의 ZOPFAN화를 위한 ASEAN의 노력은 1976년 제1회 ASEAN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방침이 재확인되었다. 이 회담의 2대 산물은 ‘ASEAN 정상회담’과 ‘동남아시아우호협력조약’의 체결이었는데, ASEAN 정상회담 제2항에서는 “회원국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유 · 평화 · 중립지대의 승인과 존중을 실현시키기 위한 초기단계의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에서도 방콕선언, 쿠알라룸프르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체약국 상호관계를 위한 6대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 i) 모든 국가의 독립 · 주권 · 평등 · 영토보전 및 국가적 동일성의 상호존중
- ii) 모든 국가가 외부로부터 간섭, 전복 또는 강제되지 않고 존재할 권리
- iii) 상호내정불간섭
- iv)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불화 또는 분쟁의 해결

- v)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사용의 포기
- vi) 체약국간의 효과적 협력

이러한 원칙은 동남아시아의 ZOPFAN화를 위한 지역 국가들의 기본 행동지침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ASEAN의 ZOPFAN에 대한 희망과 집념은 1980년대에 들어와 동남아시아의 ‘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선언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핵지대화의 노력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1983년 12월 前인도네시아 외상 A. Malik는 강대국 간의 핵전쟁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핵의 인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비핵지대화 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1984년 9월에는 ASEAN 상설위원회의 신임의장인 말레이시아의 T. A. Rithaudden외상이 비핵무기지역을 제외하여 회원국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결과가 1986년 6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연례 ASEAN 외상회의에서 ‘동남아비핵지대’를 선언하면서 ZOPFAN 실현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었다.¹¹⁴⁾

마. 평화지대의 설립 내용¹¹⁵⁾

위에서 살펴 본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평화지대설립의 그 주요내용을 이룬다.

- i) 역내 주둔군의 확대 및 확장 금지
- ii) 역내의 군사기지 및 군사장비의 제거
- iii) 역내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금지 및 비핵지대 (nuclear-weapon-free zone; NWFZ)의 규정 준수
- iv)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의 목적으로 역내에서의 군사훈련 금지
- v) 역내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의 실험 금지

114) 변창구, 상계논문, 260~263쪽.

115) Subedi, *Ibid*, pp.31~32.

- vi)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의 목적으로 전함 및 항공기의 역내 이용 금지
- vii) 통항이 유엔헌장, 특히 제2조 제4항과 해양의 평화적 사용 원칙과 전함 및 전술기는 훈련의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는 다른 국제원칙과 일치한다면 모든 국가의 선박 및 항공기의 공해 항행의 자유를 존중할 것
- viii) 역내의 어떠한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위협이나 무력행사를 평화지대의 국가들에 의한 중지 및 다른 국가와의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평화지대 국가들의 확인
- ix) 주권동등, 지역보전, 정치적 독립의 원칙을 존중하고, 다른 국가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것
- x)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의 재확인

이렇게 설정된 평화협력지대의 활용에 대해서 각 국가들 간에 논의된 자세한 사항들은 알 수 없으나,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 내 역외 강대국들에 의한 무력위협 및 무력사용을 금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역내의 국가들이 역외 국가들, 특히 강대국의 간섭으로 인하여 역내 국가들이 발전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하여 자국의 정치 및 경제 사정이 불안해지게 됨에 따라서 지역을 평화(협력)지대로 설정하고 외부의 군사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고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자국의 이익 및 지역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가. 논의의 배경 및 추진경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구상은 2007년 10월에 있었던 남북정상 회담의 결과이다. 회담의 결과 서명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

한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¹¹⁶⁾ 이는 서해북방한계선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한다는 구상이었다.¹¹⁷⁾

이후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이하 ‘2007 남북총리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합의서에서는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각 사업별 분과위원회¹¹⁸⁾를 두기로 하였다.¹¹⁹⁾ 또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이후에 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구체적인 대상지역에 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어,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¹²⁰⁾

11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중앙일보, 기사검색: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02315(검색일자: 2008. 3. 4)

117) 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2007), 14쪽. (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or.kr>)

118) 각 분과별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해주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②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③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④ 한강하구협력분과위원회(통일부홈페이지: <http://www.unikorea.or.kr>)

119) 2007 남북총리합의서 제2조,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or.kr>)

120)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행에 관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2조.

나. 서해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논의 중에서 서해북방한계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07 남북총리회담 합의문에서 밝히고 있는 평화수역은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의 보장을 위한 것’¹²¹⁾이라고 밝히고 있어,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은 평화수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논의 배경 및 경과

남북간 공동어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것은 2000년 2월 26일 남한의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채택한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비롯되었다. 이 합의서에 북한의 원산 150~200km 지점에서 남북이 함께 어로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으며, 한국과 북한이 오는 봄부터 작업에 들어가 매 5년마다 협상을 갱신하기로 하였다.¹²²⁾

2000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는 이항규 장관의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전국어민총연합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간에 합의한 동해에서의 남북공동어로조업을 책임 있는 당국의 개입아래 성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다.¹²³⁾

또한 통일부는 2001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간 접촉을 통해 동해어장 이용문제를 협의해 어업자원 공동조사, 공동어로구역설정,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어업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양측의 경제시찰단의 교환 방문도 추진할 것을 밝혔다.¹²⁴⁾ 이 당시 공동어업의 문제는 동해에 한정되어 논의되어 왔었다.

서해안의 공동어로구역설정 논의의 핵심적 배경이 된 사건은 2002년의 서해교전일 것이다. 서해교전 이후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써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되었으며, 2003년 6월 3일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꽃게

121) 2007 남북총리회담의서 제2조 1항.

122) 중앙일보, 2000년 2월 26일자.

123) 중앙일보, 2000년 4월 10일자.

124) 중앙일보, 2001년 2월 15일자.

잡이철만이라도 서해북방한계선 부근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였다.

2005년 6월 제15차 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서해상의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들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 양식, 수산물 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¹²⁵⁾ 같은 해 7월 개성에서 열린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 서해안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입어료 문제 등에 대해 집중논의하고, 남북공동어로와 관련, 수역 및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 데 따라 확정하고 공동어로기간 및 어선수, 어구, 입어료 등은 쌍방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¹²⁶⁾

이후 2006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의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나, 북측의 서해안 경계선의 재설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관한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다.¹²⁷⁾ 5월 판문점에서 제4차 남북장성급회담이 열려 남측은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상에서의 평화정착 방안을 본격 협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측이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 이외에는 협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하여 결렬되었

125)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보도자료,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084&SN=10&MSN=1

(검색일자: 2008. 3. 25)

126) 통일부,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결과 해설자료,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22&SN=1&MSN=1

(검색일자: 2008. 3. 25)

127) 통일부,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11&SN=3&MSN=1

(검색일자: 2008. 3. 25)

다.¹²⁸⁾

이듬해인 2007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으나,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¹²⁹⁾ 7월의 제6차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은 서해북방한계선 이남 해상 5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여 결국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¹³⁰⁾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서해상의 평화증진의 방안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정이 논의되었다.

이후 11월 16일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11월에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어로수역의 지정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었으나¹³¹⁾, 본 회담에서는 공동어로수역에 관한 사항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데 그쳤다.¹³²⁾ 이어 12월에 열린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에 실패하였다.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비전·과제·추진방향·

128) 통일부,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11&SN=4&MSN=1

(검색일자: 2008. 3. 25)

129) 통일부,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11&SN=5&MSN=1

(검색일자: 2008. 3. 25)

130) 통일부, 제6차 장성급군사회담 결과,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11&SN=6&MSN=1

(검색일자: 2008. 3. 25)

131) 제1차 남북총리회담시 협의된 사항이었음.

132) 통일부, 제2차 국방장관회담결과해설자료,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082&SN=2&MSN=1

(검색일자: 2008. 3. 25)

세부사업별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6개조의 합의를 채택하고,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어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¹³³⁾,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역은 설정되지 않고 있다.

(2) 서해안 공동어로구역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합의되었다. 이 선언에서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같은 해 11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본 선언에서는 서해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책의 하나로 ‘공동어로수역’이 될 수 있음을 양측 정상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을 만들기 위해서 양측의 군사적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양측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11월 제1차 남북총리회담합의서 제2조에서는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평화수역의 설정 목적이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단순히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통로를 보장’하기 위해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해주경제특구건설, 해주항의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의 5개 세부사업을 ‘서해평화특별지대’에서 추진할 계획인 것이다.¹³⁴⁾

133) 통일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60&SN=1&MSN=1

(검색일자: 2008. 3. 25)

134) 통일부, 제1차 남북총리회담합의서 해설자료(2007. 11. 16), 12~13쪽.

하지만 남북총리회담에서도 그 구체적인 공동어로수역은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할 것이라 정했다. 이는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문제는 군사적 이해관계가 해결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서해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하여 북측은 공동어로수역 설정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확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 서해북방한계선 이남지역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서해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하는 우리 측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¹³⁵⁾

이어 11월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에서 쌍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하였을 뿐, 구체적인 구역의 설정은 없었다.

<그림 10> 양측이 주장하는 서해 공동어로수역



출처 : 국방일보, 2007년 11월 30일자.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채택된 합의서 제3조는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

135) 국방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결과, 보도자료(2006. 7. 26), <http://www.mnd.go.kr>(검색일자: 2008. 3. 25)

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 데 따라' 공동어로를 실시하기로 하여, 그 구역의 설정에 있어서 남과 북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5> 서해 공동어로구역관련 논의

날 짜	내 용	비 고
2000. 2.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합의서 -원산 150~200km지점에서 공동어로 작업	-민간차원의 합의 -동해에 한정
2005. 6.	*제15차 장관급회담 -수산협력실무협의회구성· 운영 결정	
2005. 7.	*제10차 남북경제협력위원회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 구성 -공동어로· 양식· 수산물 가공 등의 어업협력 문제 협의· 해결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서해안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어로 문제논의	
2006. 3.	*제3차 남북장성급회담 -공동어로수역 설정합의 도출 못함	
2007. 7.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 -공동어로수역 설정 계속 논의기로 함	
2007. 10.	*남북정상회담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정하기로 함	
2007. 11.	*제1차 남북총리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정기로 함 -2차 국방장관회담개최예정	
2007. 12.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세부사업일정 협의 -6개조 합의서 작성 -공동어로구역 설정 못함	

북한은 해상경계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 및 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와 관련된 사항들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 이러한 주장만을 계속해서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의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제1조 2항에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제2조 1항에서도 '쌍방은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이 조항에서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에는 남북기본합의서 뿐만 아니라 2004년의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6·4 합의서」, 2007년 남북정상선언 등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 또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상의 해석을 그대로 원용해도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서해상에서의 해상경계선으로서 서해북방한계선은 아직 유효성을 지닌다 할 것이며, 그 선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하는 우리 측의 입장 또한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소결

본 절에서 살펴 본 외국의 평화지대의 사례의 경우 각 국가들 간의 구체적인 규정사항들은 알 수 없으나, 평화지대 선언 자체만으로 보건데 평화지대는 지역 내에서 유엔헌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각종 외부의 군사력을 배제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및 대량파괴무기의 제거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비핵화지대의 경우 핵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의 통항까지도 금하고 있는 반면에, 평화지대의 경우 역내 국가들의 주권, 지역보전 및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선박의 통항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³⁶⁾

또한 서해지역에서 남북간 논의되고 있는 평화지대의 구상에도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도출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서해지역의 평화지대구상은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화지대의 개념보다 지역적인 면에서 매우 좁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평화지대의 경우 평화지대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며, 특히 강대국들의 힘의 경쟁으로 인하여 역내 다수의 약소국(또는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이 제한되는 반면, 서해상은 우선 지역적으로 매우 범위가 좁으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남북

136) Subedi, *op.cit.*, p.167.

한 양측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간의 북방한계선 근해 공동어장의 개발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협력방안이다. 이는 성어기에 북한 어선이 조업을 위해 북방한계선을 월선하여 무력충돌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동어장의 개발은 남북한 어선들이 이제까지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방한계선 근해 어장에서 조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업자원 개발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어장은 북한이 한국 측과 해양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¹³⁷⁾

그러나 공동어로수역을 어떻게 설정하여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공동어장의 운용시기와 조업어선의 통제방법, 수역 내에서 경찰역할과 관련된 사항들, 생산어자원의 가공 및 판매 등의 사항들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어로구역의 설정에 있어서 설정된 어로구역이 북한이 자신이 주장해왔던 북방한계선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 측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군사적인 신뢰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서해상의 공동어로 수역의 설정은 남북한 양측 모두 안보상의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기로 한 이상, 수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서해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 등면적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본다.

제2절 평화체제로의 전환

1. 평화체제의 개념

가. 의의

평화체제(peace regime)¹³⁸⁾는 평화에 관한 체제이다. ‘체제’라는 용

137) 박창권, 전계논문, 39쪽.

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락된 정의는 아직 없으나, 체제는 ‘사회적 기구’(social institutions) 또는 ‘사회적 구조’(social structure)라 할 수 있다. 국제체제의 핵심은 권리와 규칙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국제체제는 국가와 국가간 또는 국가의 국제기구의 조약으로 형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평화체제란 평화에 관한 사회적 기구 내지 사회적 구조로서 이는 조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¹³⁹⁾

나. 한국적 개념의 평화체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¹⁴⁰⁾

첫째로, 평화체제란 1953년 ‘정전협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새로운 체제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평화체제는 ‘평화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이 ‘평화의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이 그대로 효력을 존속¹⁴¹⁾하고 있는 금일의 상태는 평화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적대행위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유지, 즉 ‘준평화의 유지’¹⁴²⁾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평화체제란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고 동시에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새로운 체제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평화체제는 ‘평화의 회복’과 그 후의 ‘평화의 유지’를 의미하게 된다.

셋째, 평화체제란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체제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평화체제란 ‘평화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138)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과제 그리고 추진전략”, 『행정논집』, 제32권(2005), 동국대학교, 58~60쪽 참조.

139) 김명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론적 개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서울: 서울컴퓨터인쇄사, 1997), 15쪽.

140) 상계논문, 24~25쪽.

141) 자세한 것은 제성호,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67~72쪽 참조.

142) 이에 대해 제성호 교수는 ‘군사적 충돌의 억제’란 표현을 사용한다. 제성호, 전게서, 199쪽, 각주 9 참조.

2. 평화협정의 체결

가. 평화협정의 개념

국제법상 ‘조약’은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인 국가·국제조직·교전단체간에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를 뜻하며¹⁴³⁾, 그 ‘평화조약’(treaty of peace)은 전쟁의 종료를 위한 교전당사국간의 명시적 합의이다. 교전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인 한, 그 명칭이 조약·교환공문·공동성명 등 무엇이든 평화조약이다.¹⁴⁴⁾ 일반적으로 전쟁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의 명칭은 ‘평화조약’이지만, 1921년 5월 20일 독일과 중국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의 명칭은 ‘평화상태의 회복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Restoration of the Peace)이고, 1950년 10월 19일 소련과 일본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의 명칭은 ‘일·소 공동선언’(Japan- the Soviet Union, Joint Declaration)이며, 1973년 3월 2일의 월남평화조약은 ‘월남에 관한 국제회의의정서’(The Ac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etnam)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평화조약의 명칭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 평화조약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상 조약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¹⁴⁵⁾

나. 평화체제와의 관계

현재 남북한은 정전협정만으로는 항구적인 평화상태 내지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되, 평화체제 전환 전까지는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약속함으로써 현재의 남북한관계를 정전상태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조약 내지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여 정전협정을 대체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143) 이한기, 전게서, 496쪽.

144) 이병조, 이중범, 전게서, 1023쪽.

145) 김명기, 전게논문, 4~5쪽.

수 있다. 정전협정만으로는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곧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평화협정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만 전쟁상태가 종결된다는 국제법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평화협정이 전쟁상태 내지 정전상태를 종료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정상적이며 통상적인 범형식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반드시 평화협정에만 의해서만 아니라 다른 방식¹⁴⁶⁾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평화상태의 회복 내지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¹⁴⁷⁾

다.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한반도 정전체제의 대체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기본시각이다. 앞서 정전협정의 체결당사자 문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는 남북한으로서 한국전쟁을 매듭짓는 평화체제의 구축 역시 남북한간에 논의되어야 하며,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결국 남북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화해부속합의서에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¹⁴⁸⁾

한편 북한은 1960년대에는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미국, 북한, 중국인데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북한에서 철수했으므로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984년 이후에는 남북한간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미국, 북한간에는 평화협정을 체

146) 교전국 쌍방이 사실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전쟁의사를 포기한 경우, 일방의 교전국이 타방의 교전국을 정복 병합한 경우에도 전쟁은 종료한다. 이밖에 ‘전승국에 의한 일방적 전쟁상태종결선언도 전쟁종료의 효과를 가진다.’는 설이 있다; 이한기, 전게서, 829쪽; 이병조, 이중범, 전게서, 1023쪽.

147) 제성호,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 72~73쪽.

148) 백진현, 전게논문, 278쪽.

결하자선 소위 3자회담 방식을 주장해 왔다. 1996년 한·미가 제안한 4자회담에 참가한 북한은 여전히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¹⁴⁹⁾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체결시 직접당사자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서 살펴본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와 일맥상통함으로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겠다. 다만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한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3. 평화체제와 남북한의 지위

국제법은 국제법이 주체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며, 국제법 주체에는 국가(states)·국제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개인(individuals)이 있으며¹⁵⁰⁾, 국가는 아니나 이에 준하는 실체인 “교전단체”(belligerency)도 제한된 의미의 국제법의 주체이다.¹⁵¹⁾

이른바 분단국가에서 그 분단국을 구성하는 한 분단체가 국제법의 주체의 하나인 국가이냐는 국제법상 명확히 규명됨을 요하는 과제 중의 하나이다. 분단한국의 한 구성 부분인 북한은 국가인가의 문제는 모든 통일 논의의 출발점이고 기점이 된다. 만일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는 국가로 되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때와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때의 해상경계문제에 있어 유엔해양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가. 일반국제법상 남북의 법적지위

일반국제법상 어떤 실체의 지위는 다른 국제법 주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이고, 시간의 경과와의 관계에서 “가변적”인 것이다.

(1) 상대적인 법적 지위

149) 상계논문, 279쪽.

150) 이병조, 이종범, 전게서, 114쪽.

151) 상계서, 139~141쪽.

“상대성”이란 국제법상 국가는 개별적인 국제법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달라짐을 의미한다.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국내법상의 국가가 당연히 국제법상 국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상 국가로 성립된 실체는 국제사회의 기존 국가로부터 “국가의 승인”(recognition of state)을 받아야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된다. 그런데 국제법상 국가 승인의 효과는 승인한 국가와 승인을 받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예컨대, 갑국은 을국을 국가로 승인했으나, 병국은 을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 을국은 갑국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이나, 병국과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아닌 것이다. 이를 국가 승인의 “상대적 효력”이라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남과 북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아니지만 남과 북을 각각 국가로 승인한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국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유엔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1991년 9월 17일 남북한 모두는 국제연합에 가입했으므로,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는 유엔헌장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가입 이후 남북한은 유엔과의 관계에서 국가로 승인된 것으로 된다. 그러나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에도 상호간에는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한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유엔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이지만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아니며, ② 북한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국가 그리고 유엔과의 관계에서는 국가이지만,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은 서로간의 상대방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상호국가는 아니다.¹⁵²⁾

(2) 가변적인 법적 지위

“가변성”이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지위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일반국제법상 남한과 북한의 지위는 시간 폭에서 보아 가변적인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 분단 초기부터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극단적

152) 김명기,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평화협정 체결”, 『고시계』, 제42권 제5호 (1997), 115~116쪽.

부정론에 입각해 왔다. 그러나 1960년도 후반부터 유일 합법성론은 완화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북한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론을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남북공동성명”, “6·23평화통일선언”, “1·18남북불가침협정체결제의” 등으로 대한민국의 유일합법성론의 주장은 후퇴되고, 북한 정권의 존재를 상대적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남북한의 지위는 남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아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내일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할 수도 있으며, 승인한 후에 북한은 국가로서 그 지위가 변경되게 된다.¹⁵³⁾

나.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지위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전문에서 남과 북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과 북과의 관계에서 남도 국가가 아니고 북도 국가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남과 북 중 어느 일방은 국가이나 타방은 국가가 아니라는 뜻일 뿐인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국제법상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고, 국제법상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는 국가·국가조직·교전단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라는 것이 민족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은 국제법적 설명이 되지 못한다.¹⁵⁴⁾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남과 북이 상대방의 실체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관해서는 전문과 각 본조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의 실체는 국가이고 북의 실체는 교전단체로 볼 수밖에 없으며,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반대의 입장일 것이다. 요컨대,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어도 남과 북이 서로를 국가로 승인한 것으로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¹⁵⁵⁾

153) 상계논문, 117~118쪽.

154) 김명기, 엄정일, “남한과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상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집(1998), 146쪽.

다. 남북평화협정의 체결과 북한의 지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북한은 현재의 교전단체의 지위에서 국가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전쟁의 주체인 “교전단체”에 불과하며 그 정부는 “지방적 사실상 정부”이다. 국제법상 교전단체는 전쟁의 주체로서 일시적인 국제법상의 주체이며 이는 전쟁에 관한 조약, 예컨대 포로교환협정, 휴전협정 등을 체결할 능력을 갖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전단체는 전쟁의 주체로서 전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국제법상을 능력을 갖는다. 따라서 교전단체는 휴전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교전단체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전쟁을 종료되게 되고 따라서 교전단체도 국제법상 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도 종료되게 된다. 이 경우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국제법에 주체였던 교전단체는 어떤 지위에 있게 되느냐는 평화협정의 내용으로 정해질 것이다.

4. 소결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반드시 평화협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의 계기를 활용하여 정전협정의 평화협정대체, 평화보장체계 수립 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평화공세를 전개해 왔으며¹⁵⁵⁾, 이에 남한은 북한의 정전체제 무실화전략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면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모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남북한과 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 구상이었다.

4자회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남북한 간의 평화협정의 체결이나, 동시에 가장 큰 장애물 역시 평화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당사자 문제의 해결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남한은 체결당사자로 남과 북을 거론하는 반면에, 북한은 미·북 당사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당사자

155) 상계논문.

156)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269쪽.

해결원칙을 근간으로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할 남북평화협정에는 일반적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사안과 남북한 특수사정에 해당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한은 「남북기본합의서」가 평화체제의 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의 선차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문제를 제기하여 한반도의 현상 및 군사력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¹⁵⁷⁾

이러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평화협정의 체결에 관하여 난황을 겪고 있으나, 남북 양측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평화협정의 체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남북한의 지위에서 있어서는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평화협정의 내용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견해¹⁵⁸⁾를 살펴 보건데, 이러한 관계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남북이 상호간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남북의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평화협정의 내용에 삽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남북의 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이지 국가와 국가가 되지 않을 듯 하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평화체제의 구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서해상에서의 경계확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논의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기본합의서 및 제1차 남북총리회담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서해상에서의 해상경계선은 상호 합의하여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할 때까지는 ‘쌍방이 관할하여 온 수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현 북방한계선을 그 경계선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의 지위는 ‘가변적’인 것이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할 것이다.

157) 상계서, 296쪽.

158) 상계서, 331~338쪽.

제3절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서해해상경계선

1. 국제법상 해상경계선 설정시의 외측한계

가. 기선

기선은 영해 및 기타 해양수역 특정을 위한 기준선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1) 통상기선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연안의 저조선을 말하며,¹⁵⁹⁾ 환초상의 도서 또는 암초를 가진 도서의 경우 기선은 암초의 해양측 저조선으로 한다.¹⁶⁰⁾ 하천이 직접 바다로 유입하는 경우 기선은 하천의 양제방의 저조선상 지점간의 하구를 가로질러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한다.¹⁶¹⁾ 간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해 내에 있을 경우 그 간출지상의 저조선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¹⁶²⁾ 그러나 간출지의 전부가 영해 밖에 위치하는 경우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아니한다.¹⁶³⁾ 따라서 영해의 폭은 원칙적으로 저조선으로부터 측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직선기선방법이 적용된다.¹⁶⁴⁾

(2) 직선기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한 경우나 해안의 인접수역에 암초나 도서가 많이 있는 경우 최원방의 도서나 암초의 외측면과 외측점간을 직접 연결시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영해의 폭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¹⁶⁵⁾

159) 유엔해양법협약 제5조.

160) 유엔해양법협약 제6조.

161) 유엔해양법협약 제9조.

162)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 제1항.

163) 유엔해양법협약 제13조 제2항.

164) 이병조, 이중범, 전개서, 420쪽.

165) 상계서.

이 직선기선은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규정은 없지만, 공해자유원칙과 육지와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길이를 정해야 한다. 또한 간조시에만 출현하는 암초나 간출지로부터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없으나, 항상 수면상에 존재하는 등대 또는 유사시설이 간출지상에 건설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¹⁶⁶⁾ 그러나 타국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절단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¹⁶⁷⁾

나. 영해

영해의 폭은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으며¹⁶⁸⁾, 두 국가의 해안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인접하고 있는 경우 어느 국가도 양국간에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의 각 영해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최근점으로부터 등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이원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사적 권원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와 다른 방법으로 양국의 영해의 경계를 확정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⁶⁹⁾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¹⁷⁰⁾ 유엔해양법협약은 이들 외측한계를 고정시키는 방법에 관하여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이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로 해도상에 표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측지자료를 명기한 지리적 좌표점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¹⁷¹⁾

라. 대륙붕

166)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4항.

167) 유엔해양법협약 제7조 제6항.

168) 유엔해양법협약 제3조.

169)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170) 유엔해양법협약 제57조.

171) 유엔해양법협약 제75조.

(1) 일반원칙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을 따라 연결된 대륙변계의 외연까지의 해저, 해상과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¹⁷²⁾ 연안국의 대륙붕으로 포함될 대륙변계에는 지질학적 대륙붕과 대륙사면 및 대륙용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해양저와 해양산맥은 대륙변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¹⁷³⁾

(2) 200해리 이내의 대륙변계인 경우

대륙변계의 외연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 해상과 하층토를 대륙붕으로 한다.¹⁷⁴⁾

(3) 200해리 이상의 대륙변계

대륙변계의 외연이 200해리 이원까지 확장되는 경우에 그 외측 한계의 기준은 첫째, 대륙변계의 대륙용기가 퇴적암으로 구성된 경우에 그 외연은 대륙사면의 경사도가 최대로 변경되는 지점을 대륙사면단이라고 하고 퇴적암의 두께가 이 대륙사면단으로부터의 직선거리의 1%와 같거나 이보다 최소한 큰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내포된 구역으로 한다.¹⁷⁵⁾

둘째, 대륙변계의 대륙용기가 퇴적암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대륙사면단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않는 고정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내포된 구역으로 한다.¹⁷⁶⁾

셋째, 대륙붕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으로 확장되는 경우, 연안국은 경도와 위도좌표로 표시된 고정점을 연결하여 그 길이가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직선으로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그어야 한다.¹⁷⁷⁾

2. 국제법상 경계획정 원칙

172)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 전단.

173)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3항.

174)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 후단.

175)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4항 (i).

176)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4항 (ii).

177)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7항.

가. 합의의 원칙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한 원칙으로서 우선 당사국간의 합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¹⁷⁸⁾ 이것은 국제적인 법률관계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한다는 현 국제법의 기본양상에 비추어 당연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물론 오늘날 국제적인 법률관계의 새로운 양상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 국제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권력주체는 여전히 국가이며 국가를 규제할 수 있는 길은 자기구속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필연적인 귀결로서 합의는 국제법의 최고법규이고 합의에 의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⁷⁹⁾

북해대륙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될 단일의 원칙은 없으며, 당사국간에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합의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합의에 의한 문제의 해결은 당사국이 실효성 있게 이행해야 할 하나의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¹⁸⁰⁾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는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의 기준에 있어서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국가군과 1958년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중간선

178)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

제74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83조 대향국간 또는 인접국간 대륙붕의 경계획정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대륙붕의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79) 박용현, “동북아지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한국동북아논총』, 제2집 1호 (1996), 560쪽.

180) 상계논문, 562쪽.

· 등거리원칙을 주장하는 국가군의 대립으로 1981년 해양법협약초안이 성립될 때까지 별다른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결국 양국가군은 공유대륙붕의 경계확정문제에 관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인접 또는 대항국간의 대륙붕의 경계확정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국제법에 의거한 합의에 의하여 행한다’는 공식해양법협약초안에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해양경계확정에 있어서 합의의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고, 또한 분쟁당사국은 우선 직접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유엔헌장 제33조 1항의 정신에도 맞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강제관할권을 가진 권력기관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당사국간의 합의에만 맡긴다면 거기에는 상대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정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¹⁸¹⁾ 따라서 합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는 출발점으로서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형평의 원칙

해양경계확정을 함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바¹⁸²⁾, 형평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형평이란 반드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¹⁸³⁾

재판소에 의하면 ‘자연을 완전히 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형평은 바다로의 출구가 없는 국가에게 대륙붕구역이 배정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긴 연안선을 갖는 국가의 입장을 제한된 연안선을 갖는 국가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함이 문제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평등이란 동일한 차원 내에서 도모되어야 하는 것이며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은 자연적 불평등은 아니다’라고 하

181) 김찬규, “공유대륙붕의 경계확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제16권 제1호(1973), 23~24쪽.

182)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1항 및 제83조 제1항.

183)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Judgement, 1969*, para. 91,

<http://www.icj-cij.org/docket/files/52/5561.pdf> (검색일자 : 2008. 2. 18)

였다.¹⁸⁴⁾ 이것은 결국 형평이란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형평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형평의 원칙은 도덕, 양심 그리고 신의성실이 일반적으로 국내법체계의 일부로 채택된 것과 같은 정도로 국제법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재판에서 적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일례로서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들 수 있는 바, 형평의 원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법재판소의 법적추론이 여하한 것일지라도 그 결정은 정의상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형평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시하고 법을 선언하는 재판소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질 때 그 의미하는 바는 그 결정은 규칙 밖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려사항에 그 객관적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위에서 형평의 원칙의 적용을 요청하는 것은 정확히 법의 규칙이다’고 판시하고 있다.¹⁸⁵⁾ 즉, 올바른 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형평의 원칙의 적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라는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의 적용이 이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요청이라면, 형평을 기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형평한 절차를 적용함을 확실히 할 목적으로 국가들이 감안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법적 제한은 없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형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모든 고려사항의 균형을 취하는 것이다. 상이한 고려사항에 부여되어야 할 상대적 무게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당해 제요인의 균형을 취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감안되어야 할 것 같다’고 판시¹⁸⁶⁾하고 있다. 즉, 북해대륙붕사건에서는 형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오히려 모든 관련사정을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한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184) *Ibid*, para. 91.

185) *Ibid*, para. 88.

186) *Ibid*, paras. 93-94.

있다.

다. 중간선 · 등거리원칙

중간선 · 등거리선 방법이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등장한 것은 1958년 제네바협약 중 대륙붕협약에 의해서이다. 대륙붕협약 제6조에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원칙은 합의가 없을 경우 또는 경계선을 정당화를 특별한 사정이 존재치 않을 때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에 따라서 경계획정을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경계획정의 마지막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1958년 제네바회의에서 영국대표는 ‘중간선으로부터의 면탈이 정당화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마저 중간선 · 등거리선 원칙은 협상을 위한 최선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관계국에게 수락될 수 있는 공평한 결과를 이끌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¹⁸⁷⁾ 뿐만 아니라 북해대륙붕사건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에 의한 경계획정방법이 편리한 방법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여¹⁸⁸⁾ 중간선 · 등거리원칙의 장점을 지적한바 있다.

물론 중간선 · 등거리원칙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견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앞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태도와는 달리 동일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당사국은 특정한 사건에서 모든 사정을 배려하고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방법으로 행동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중간선 · 등거리방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여러 방법도 있으며 관련된 지역에 따라 단일적으로 또는 다른 것과 결합하여 채택될 수 있다’고 하면서¹⁸⁹⁾ ‘공유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중간선 · 등거리원칙의 적용이 당사국에게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사정 하에서 의무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밖의 어떤 단일적인 경계획정방법도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¹⁹⁰⁾

187) 김찬규, 전제논문, 32쪽.

188)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op.cit.*, para. 22.

189) *Ibid.*, para.86.

190) *Ibid.*, para.101.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에 대한 언급 대신 인접·대향국간의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인 상황에 따라 등거리선 방법이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거나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형평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이미 원칙은 아니라 할 것이다.¹⁹¹⁾

이처럼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은 그 범규성과 의무적 적용이 부인되고는 있으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¹⁹²⁾

3. 경계획정시 섬의 효과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¹⁹³⁾ 유엔해양법 협약은 이러한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¹⁹⁴⁾”라고 규정하고 있어 섬이 그 자체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않는다.¹⁹⁵⁾

서해상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우리의 관할인 서해 5도 및 북한 관할의 섬들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인 바, 섬의 지위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볼 수 없다.

가. 섬의 지위

191) 이석용, “우리나라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고찰”, 『해양정책연구』, 제4권 제1호(1989), 9쪽.

192) 최진모, 전제논문, 91쪽.

193)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1항.

194) 유엔해양법협약 동조 2항.

195) 유엔해양법협약 동조 3항.

(1) 영해경계 획정시 섬의 지위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섬의 영해에도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어떠한 섬이 영해를 가질 수 있고 섬주변에 기선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섬이 얼마만큼의 영해를 가질 수 있는 가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결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의 수역에 섬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특별상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섬의 존재가 특별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일정한 섬에 영해 경계 획정시 기준선 설정을 위한 완전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커다란 비형평이 초래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영해경계 획정시 섬의 존재로 인한 비형평과 “특별상황”의 존재여부는, 문제의 수역에 존재하는 섬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섬이 대안국 또는 인접국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그로 인한 비형평이 커지게 됨을 고려하여, 섬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¹⁹⁶⁾

Hodgson은 섬을 크기에 의하여 4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는 0.001평방마일 이하의 면적을 가진 암석(rocks)은 그것이 해양경계선으로부터 다른 국가 쪽으로 12해리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엔크레이브”(enclave)를 가질 수 있지만, 등거리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면적 1평방마일 이하의 소도(islets)의 정확한 가치는 인접국 및 대항국과의 관계로부터 나오지만, 등거리선에 부분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며 영해가 제한된 범위의 수역인 것을 고려할 때 그 가치는 절반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000평방 마일 이하의 면적을 가진 islets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연안국이 갖게 되었을 영해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등거리선에 완전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1000평방 마일 이상의 면적을 가진 섬(islands)들은 그 크기와 중요성 때문에 본토와 마찬가지로 등거리선에 완전한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¹⁹⁷⁾

196) Hodgson, R. D., “Islands: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in J.K. Gamble and G. Pontecorvo(eds.), *The Law of the Sea: The Emerging Regime of the Oceans* (Ballinger Publishing Co., 1973), p. 151

다음 경계획정시 섬의 지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섬의 위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영해의 경계획정에서는 특히 섬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영해는 대륙붕이나 경제수역과 달리 그 존재 이유가 주로 안보이익의 보호에 있기 때문에 지질이나 자원의 존재와 같은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해의 경계획정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중요성을 가지며, 이러한 맥락에서 상당한 크기의 섬들의 영해경계선에 대한 효과는 주로 섬의 위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위치에 따른 섬의 영해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섬이 본토 해안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여 섬이 연안의 기선에 포함되는 때에는 이러한 섬은 원칙적으로 영해의 경계획정에 완전한 효과를 갖는다.¹⁹⁸⁾ 그러나 “특별상황”(special circumstances)이 존재하거나 “역사적 권원”(historic title)에 의하여 등거리선으로부터 이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등거리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경계선이 너무 복잡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국이 합의하여 단순화된 등거리선(simplified equidistance line)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섬이 본토에 근접해 있기는 하지만 본토 해안의 기준선에 포함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깝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섬은 완전한 영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섬이 본토에 근접해 있다고 할지라도 섬이 양국 간의 좁은 해협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관점에서 완전한 영해를 갖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다음 섬이 대항국간 또는 인접국간의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인데, 섬이 매우 넓은 바다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때에는 영해의 경계선 획정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해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고려할 것은 바다가 좁아서 한 국가에 속하는 어떠한 섬에 완전한 영해를 인정하면 다른 국가의 영해가 12해리 이내로 축소되는 경우인데 이에 관해서는 국가의 실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좁은 바다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섬에 경계획정에 대한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는

197) *Ibid*, pp. 170~171.

198) D. W. Bowett, D. W.,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Oceanna Publications Inc., 1979), p. 7.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러한 섬의 존재는 특별상황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섬의 효과를 적절히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국가들의 실행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잘 것 없는 섬들의 효과는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은 섬이 다른 국가의 영토에 근접해 있는 경우로, 섬이 좁은 바다의 등거리선이나 중간선 너머에 위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영해 경계선에 대한 섬의 영향을 결정해 주는 일반 원칙을 발견해 내기는 쉽지가 않으며 섬에 완전한 12해리의 영해를 인정하거나, 등거리선 적용 시 다른 국가의 영해가 12해리 이내로 감소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부분적으로는 “형평”(equity)이 “특별상황”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경계획정시 고려사항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심화되게 되었다.

(2) 대륙붕 및 경제수역 경계획정시 섬의 지위

(가) 등거리선 원칙과 섬의 지위

국제법위원회가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검토를 시작하였을 때, 섬들은 등거리선·중간선에 의한 경계획정시 그 기준선으로서의 가치가 제한되는 특별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후 국제법 위원회와 제1차 해양법회의를 거치면서 모든 섬들이 경계획정시 기준선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으며,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수역에 존재하는 섬은 협약 6조 “특별상황”의 전형적인 예가 되었다. 국제법위원회는 특별상황을 등거리선 규칙에 대한 일종의 “도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도입한 것이었고, 1953년 전문가위원회에서도 등거리선 획정시 모든 섬들은 기점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반면에 특별상황이란 용어의 모호함을 지적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주장하거나, 특별상황에 해당하는 섬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결국 제1차 해양법회의에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된 예외규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특별상황에 해당하는 섬의 범위를 분명히 하지는 못했다.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분쟁당사국들은 경계선에 커다란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소도와 같은 지형들이 특별상황의 성격을 갖는다는 데 합의 하였으며, 법원도 본토에 기초하여 그어진 등거리선 방식에 의한 경계선을 크게 왜곡시키는 작고 보잘 것 없는 섬들은 특별상황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나) 형평의 원칙과 섬의 지위

형평에 맞는 경계획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은 등거리선방법과 해안선과 대륙붕(경제수역)의 면적사이에 일정한 비례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등거리선 방법을 경계획정에 관한 유일한 원칙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유사한 해안선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방법도 형평의 원칙에 따른 경계획정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¹⁹⁹⁾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경계획정은 위와 같은 방법의 적용 이전에 “관련 상황”(relevant circumstances)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경계획정시 고려해야 할 관련 상황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문제 수역의 지리적 상황과 지질·천연자원의 존재여부와 위치 및 섬의 존재가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는 “형평”을 근거로 경계획정시 섬의 효과를 축소시키려는 견해와 1958년 대륙붕협약이 규정한 등거리선-특별상황 원칙을 고수하려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암석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을 제한하고 등거리선 방법 대신에 형평에 맞는 해결을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섬의 해양수역에 대한 권원과 경계선에 대한 영향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차 해양법회의에서의 분위기가 경계획정시 섬의 영향을 축소하는 데 동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에 대한 섬의 효과를 제한하지는 각국의 제안은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섬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나. 섬의 효과

199) 이석용, 『섬의 국제법상 지위』 (서울: 진성사, 1988), 134쪽.

(1) 섬이 완전한 효과를 갖는 경우

지리학적으로 섬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그 크기라든가 중요성에 비추어 모든 점에서 본토로 취급되는 커다란 섬들이 대륙붕이나 경제수역 경계획정시 완전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섬이라고는 하지만 브리튼 섬이나 쿠바, 그린랜드, 보르네오, 제주도 같은 거대한 섬들은 자체의 대륙붕과 경제수역을 가짐은 물론 경계획정시에도 기준선으로 완전한 효과를 갖는다.

다음 섬이 본토의 해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거나 본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섬의 대륙붕 및 경제수역 경계획정시 경계선에 완전한 효과를 갖는다. 특히 수많은 섬들이 해안에 근접해 있어서 해안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섬들은 경계획정을 위한 완전한 기점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유고간의 아드리아 해에서의 경계획정에서 유고 해안 외곽의 섬들은 완전한 효과를 인정받았으며, 핀란드와 소련간의 핀란드 만에서의 경계획정과 이란과 오만간의 동부 페르시아만에서의 경계획정에서도 그러한 섬들은 비슷한 효과를 인정받았다.²⁰⁰⁾

마지막으로 당사국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제의 수역에 존재하는 섬에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69년의 협정에서 경계선이 가능한 주요 영토의 일반적 방향을 따르도록 하면서도 소도들을 연결하는 직선기선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북해에서 노르웨이와 영국, 영국과 네덜란드,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합의에 의해 일정한 섬에 경계획정에 대한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였다.²⁰¹⁾

(2) 섬이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섬들은 육지경계선과 해양이 만

200) Karl, D.E., "Islands and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1(1977), pp. 655~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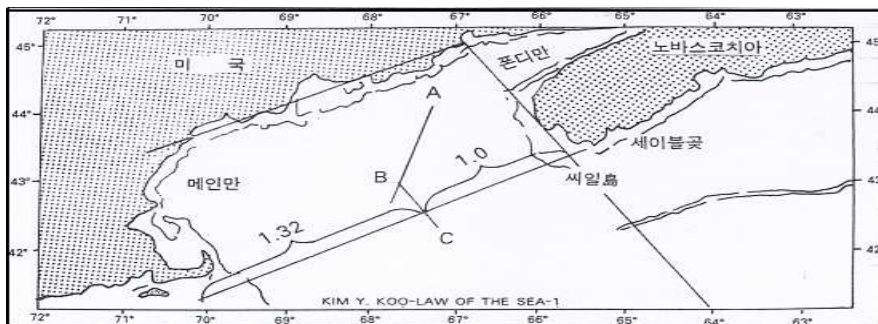
201) 이석용, 전게서, 146쪽.

나는 지점 부근이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들이다. 육지경계선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 부근에 위치하는 섬들은 등거리선 방식에 의하여 경계확정을 하는 경우 경계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섬들은 대부분 그 섬의 영유권 문제와 관계없이 자체의 대륙붕이나 경제수역을 가지지 못함은 물론 경계확정시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못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메인만 경계확정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기로 합의하면서, Machias Seal섬의 남쪽에 위치한 점으로부터의 경계선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도 이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한다.²⁰²⁾

폐쇄해나 반폐쇄해와 같은 좁은 수역 중간부분이나 그 너머 또는 등거리선 너머에 위치하는 섬들도 그것이 소도인 때에는 대부분 대륙붕이나 경제수역 경계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림 11> 메인만 경계확정



출처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004), 530쪽.

이러한 경우는 주로 대안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 특히 문제의 수역이 폐쇄해나 반폐쇄해인 경우 그러한 섬에 경계선에 대한 커다란 효과를 부여하게 되면 평형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202) Cooper, J.,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 Area", *Ocea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Vol. 16(1986),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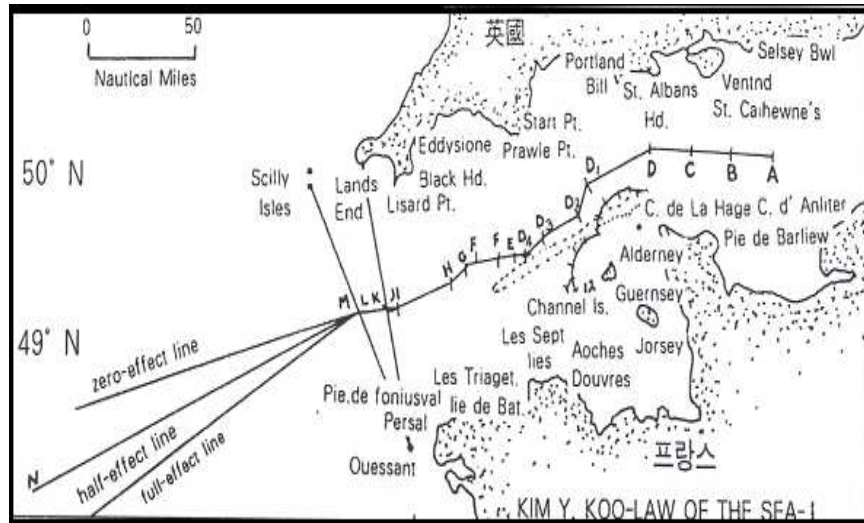
(3) 섬이 부분적 효과를 갖는 경우

섬이 대륙붕이나 경제수역 경계선에 부분적 효과를 갖는 것은 섬의 크기나 인구,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섬의 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완전한 것으로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즉 본국 영토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섬의 중요성에 비추어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형평상의 문제가 있는 섬과, 약간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으로 문제의 수역 중앙부에 위치하는 섬 및 상당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중요한 섬으로 본국 영토와는 격리되어 다른 국가의 영토 가까이에 위치하는 섬들은 대개 경계획정시 부분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섬들의 부분적 효과는 “반쪽효과”(half-effect)를 인정하는 등 제한된 효과를 부여하는 방법이나 “엔크레이브”(enclave)를 설치하는 방법에 의해 경계선에 반영되어 왔다.

섬의 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절반으로 한 사례는 영·불 대륙붕사건에 관한 중재재판과 튀니지 리비아간 대륙붕사건, 미국과 캐나다간 메인만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법원의 판결에서도 발견된다. 영·불 대륙붕사건에서 프랑스는 영국의 실리제도(Scilly Islands)와 자국의 우상(Ushant) 섬을 무시하고 양국 본토해안의 일반적 방향에 따라 경계선을 그을 것을 주장하였으며, 영국은 실리제도에 완전한 효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형평의 논리 하에 실리제도에 “반쪽효과”만을 인정하였다.²⁰³⁾

203) 우상섬과 영국본토 남서단에서의 등거리선 및 실리섬과 우상섬에서의 등거리선과의 중간선을 작도하여 이를 경계로 삼았다. 중간선과 J-K-L연장선의 교점을 M으로 하고 1,000m 등심선 끝단인 N지점까지 MN의 경계선을 반분 효과가 적용되는 최종경계로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I』 (대전: 애드파워, 2004), 137~140쪽.

<그림 12> 영·불 대륙붕 특별중재판결



출처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004), 5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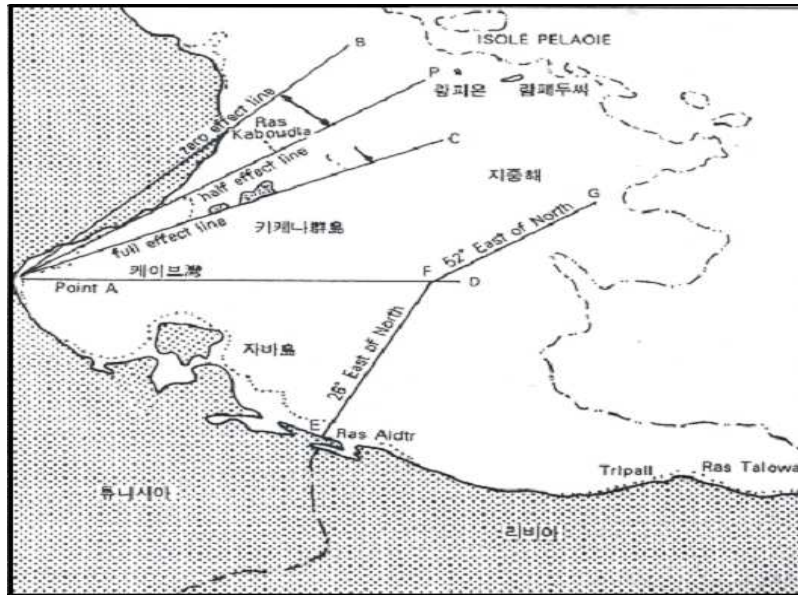
튀니지와 리비아간 대륙붕사건에서도 튀니지의 Ras Kaboudia 남쪽 11해리 해상에 위치한, 두개의 주요 섬과 여러 개의 소도로 구성된 주요 섬과 여러 개의 소도로 구성된 Kerkennah섬의 지위가 문제시 되었다.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영·불 대륙붕 사건에서의 선례에 따라 이 섬에 “반쪽효과”를 부여하여, 튀니지 해안의 일반적 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Point A에서 튀니지 해안을 따라 하나의 선(AC)을 긋고 Kerkennah섬의 서쪽 끝까지 또 하나의 선(AB)을 그어 생긴 각을 2등분하여 이를 기준선(AP)으로 하였던 것이다.²⁰⁴⁾

그 후 1984년 미국과 캐나다간 메인만 경계확정사건에서도 캐나다 노바스코티아 해안의 Seal섬은 반쪽효과를 인정받았다. 국제사법법원 특별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제2분선에 해당하는 수역에서는 1.38 : 1인 미국과 캐나다 해안선의 길이의 비율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나, 이 섬에 절반의 효과를 인정하여 중간선을 1.32 : 1의 비율이 되도록 캐나다 쪽으로 이동시켰다. 사건에서 재판부가 Seal섬에 효과의 절반을 인정한 것은 영·불 사건과 튀니지와 리비아간 사건에서의 선례를 따른 것이지만, 앞의 두

204)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5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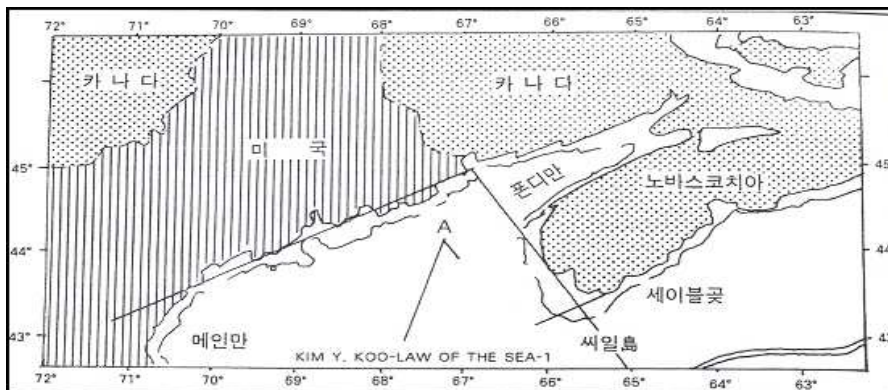
사건에서는 각을 2등분하는 방법에 의해 “반쪽효과”를 적용한데 비하여 이 사건에서는 중간선을 측면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과를 적용하였다.

<그림 13 > 튀니지·리비아간 대륙붕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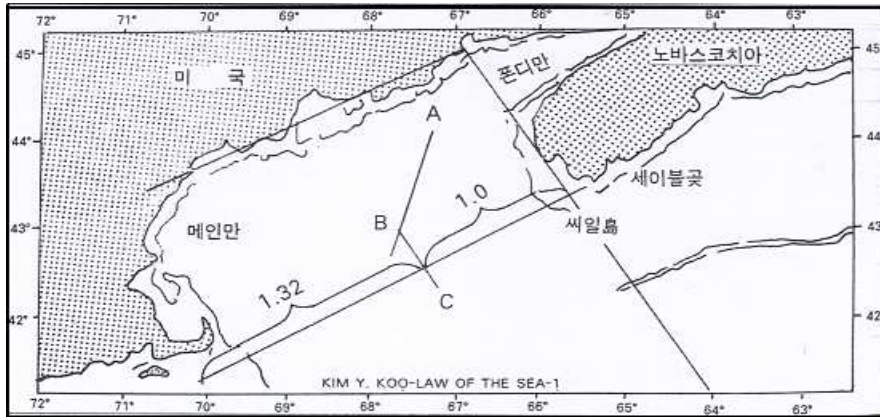


출처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2004), 525쪽.

<그림 14> 메인만의 경계-1



<그림 15> 메인만의 경계-2



출처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530쪽.

영·불 대륙붕 사건에서는 또한 엔크레이브 허용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채널제도는 자국의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기점으로서의 가치는 부정되어야 하지만, 6해리의 “엔크레이브”는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형평의 원칙이나 특별상황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대륙붕이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채널제도 주변에 12해리의 경계선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엔크레이브”를 설치하였다.

4. 서해 해상경계 획정

평화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남북이 상호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서해 해상경계선 획정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상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으나, 남북이 상호 국가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서로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의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면 남과 북은 남북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해상의 경우는 인접한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등거리선-중간선원칙의 적용 시에는 대항국간 방식을 적용하되 부분적으로 중간선 원칙보다 등거리선 원칙의 적절한 구역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 원칙에 따르는 것이 남북이 모두 “형평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서해상의 경우 매우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대해서 최대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이 지역에 존재하는 각각이 관할하는 섬들의 지위 및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그 경계선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측 관할인 서해 5도 중 가장 큰 백령도가 47km² (약 18.1평방마일)밖에 안되나, Hodson의 섬의 분류에 따르자면 완전한 효과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서해 5도는 북한의 관할지역에 근접하여 있어 북한관할지역 연안에 직선기준선을 긋고 그로부터 12해리의 폭으로 선을 그으면 서해 5개 도서가 거의 그 안에 포함된다. 더구나 서해 5도를 무시하고 남북한의 경제수역 경계선을 그으면 인천앞 바다의 상당 부분이 북한 측에 속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서해상에서는 남북이 단일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형평스러운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고려하여 볼 때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 설정을 위한 남북한의 기점은 <표 6>와 같이 될 것이다.

<표 6> 중간선-등거리원칙 경계 획정시 남북한의 기점비교

	남측기점	북측기점
중간선 원칙 적용시 남북간 대항 기점	백령도(용기원산)	소돌초(마합도 북서방)
	백령도(연봉)	마합도
	대청도 북동단	하기도
	소청도(괭암)	하기도(기린도 정서방)
	소청도(괭암)	오도(비엽도 북서방)
	대연평도(북단)	미력리도
	대연평도 북서방	구월포갑
등거리선 원칙	소청도(괭암)	오도
적용시 남북간 기점	대연평도 서방(가지도)	웅도

출처 : 최진모, “서해상 남북한간의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연구”, 103쪽.

이에 따라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그으면 기존의 서해북방한계선의 모습과 대부분의 구역에서 일치하나, 옹도 남부수역이 현 서해북방한계선의 위치보다 현저히 남쪽으로 내려간 모습이다. 이는 이 수역에서 북측의 기점인 옹도에 대항하는 남측의 기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청도와 옹도의 등거리선과 연평도와 옹도간의 등거리선을 연결한 선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옹도는 그 남방으로 최대 12해리의 관할범위를 넘지 않게 획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총리회담에서 새로운 해상경계는 계속 합의하여 설정하기로 하였으므로 합의를 통해 설정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할 것이나,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중간선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⁵⁾

그럼 이 ‘특별한 사정’은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 새해상경계를 남북의 경계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관할하고 어로활동을 영위해 온 서해 5도서 주변 및 경기만일대의 어장을 잃게 된다. 아울러 그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보상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기존의 인천항 및 평택항을 비롯한 경기만의 주요 항구로 접근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경계선을 넘어 올 경우에도 이의 단속을 위한 우리 해경의 활동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북한의 영해가 우리 영해 및 영토 깊숙이 치우치게 되어 북한이 우리의 수도권 지역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한 국가의 안보가 다른 국가의 영토경계로 인하여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국제법에서 말하는 ‘형평스런’ 결과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김영구 교수는 남북이 상호 국가의 승인을 하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육상에서는 정전선 자체가 그 경계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해상에서도 동·서해안의 북방한계선이 그 경계가 되어야 하고, 이때야 말로 역사적 권원에 의한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선 및 등거리 원칙이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

205) 유엔해양법협약 제15조.

이라고 한다.

생각건 데, 그 동안 우리가 서해 5도 주변 및 경기만 일대의 어장에서 어로행위를 영위해 왔으며, 서해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권 및 군사통제권이 작용해 왔음을 볼 때, 역사적 권원에 의한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북방한계선에 대한 남북간의 법적 논쟁의 원인은 첫째, 정전협정 당시 해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을 협정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데 있으며, 둘째, 필요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유엔군사령부에 의한 일방적인 조치였으며, 셋째, 정전협정에 교전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점, 넷째, 이를 근거로 북한이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발표하는 등의 도발을 일삼는 데에 있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최근 공동어로수역 설정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의견차가 좁혀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해북방한계선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남북간의 상호 입장차이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중요성으로서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의 어자원을 들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 속에서 꽃게잡이는 외화벌이의 큰 수단이 되고 있으며, 연 평균 약 200억 원 정도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해상교통로의 확보 문제이다. 서해 북방한계선으로 인하여 남한 측은 인천항 및 평택항 등에 대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해주항의 출입항로가 남한 측의 선택에 따라 제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서해해상은 수도권 방위를 위한 완충지대를 제공하며 북한의 군사공격개시선으로부터 수도권과의 거리를 이격시켜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제거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안보적 이해의 상충이 북방한계선 분쟁의 본질적인 요인이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남북간 문제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군사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서해상에서 계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의도는 첫째,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체제를 체

결하기 위한 유리한 협상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둘째, 서해 5도 주변해역에 대한 통제능력을 확보하여 전략적 우위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셋째,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영해가 12해리로 확장되고 200해리 경제수역이 설정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실리를 추구하고자하는 측면과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조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북방한계선을 둘러싸고 발생한 서해상의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평화지대의 설정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제시하였다.

평화지대의 경우, 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역내 지역에서 일체의 외부의 군사력을 배제하고, 역내 수역을 유엔헌장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평화적 목적으로 해양을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남북한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경우는 외부의 군사력보다는 남북간 쌍방의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서해지역의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여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것은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선행조건으로서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여 남북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하여 공동의 이익을 향유하고,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여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함으로써 남북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 다만, 공동어로수역의 설정 기준에 있어서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의 등거리, 등면적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그 기준은 서해북방한계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래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상태에서 평화상태로 가는 과정에서 교전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설정되는 잠정적·과도적인 체제이다. 따라서 정전협정만으로는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될 수가 없다. 그러한 점에서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법리상 틀린 명제는 아니다. 다만, 북한이 정전협정 뿐 아니라 평화협정체결 당사자를 남과 북이 아닌 미국

과 북한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정전협정의 체결 당사자의 지위가 있듯이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당사자 자격 또한 당연히 가지며, 더욱이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을 위한 평화협정의 체결 대상을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보는 것 자체가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 정전체제에서 남북은 서로를 국가로 보지 않고 상호 교전단체로 여기고 있으나,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경우 평화협정의 체결 능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할 것이므로 평화협정 체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상호 국가로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며,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총리회담합의서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만 인정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서해해상경계선은 남북이 상호합의 하여 확정하기로 하였지만,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하의 현 북방한계선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남북이 상호 국가의 승인을 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서해상의 경계는 당연히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의 북한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설정된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 할 것이다. 다만, 해상경계선 설정의 협상과정에서 각국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차원에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 할 것이다.

우리는 서해북방한계선을 남북간에 지켜왔던 해상경계선이며,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설정되기 전까지 앞으로도 지켜야할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북한과 계속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을 국가의 지위로 인정하게 되더라도 해상에서의 경계는 남북이 가진 '특별한 상황'에 따라 기존의 서해북방한계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계 및 정부도 공통된 입장을 견지하고 공통된 논리에서 서해북방한계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김명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론적 개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서울컴퓨터인쇄사, 1997.
-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서울: 북21, 2004.
- _____,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과 평화 정착방안”, 독도, NLL문제의 실증적 정책분석, 부산: 다솜출판사, 2007.
- 국방부,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서울: 신오성기획사, 2007.
- 이병조, 이종범, 국제법신강, 서울: 일조각, 2007
- 이석우,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 파주: 집문당, 2007.
- 이석용, 섬의 국제법상 지위, 서울: 진성사, 1988
- 이한기, 국제법강의, 서울: 박영사, 2006.
-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2002.
-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I, 대전: 애드파워, 2004.

2. 논문

- 고유환, “남북기본합의서 성격과 이행방안”, 『북한학보』, 제24호, 1999.
- 김명기, “서해 5도서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23권 제1, 2호, 1978.

- _____,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평화협정 체결”, 『고시계』, 제42권 제5호, 1997.
- 김명기, 엄정일, “남한과 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상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2집, 1998.
- 김병기,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의 법적 성격”, 『토지공법연구』, 제9집, 2000.
- 김보영, “정전회담쟁점과 정전협정”, 『역사비평』, 2003.
- 김영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해양전략』, 제83호, 1994, 6.
- _____,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해상경계선과 통항질서에 대한 분석”, 『서울국제법연구』, 제7권 제1호, 2000, 5.
- _____, “북방한계선(NLL)과 서해교전사태에 관련된 당면문제의 국제법적 분석”, 『STRATEGY 21』, 제9호, 2002.
- 김정건, “서해 5도 주변수역의 법적 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33권 2호, 1988.
- 김찬규, “북한의 영해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1호, 1995.
- _____, “공유대륙붕의 경계확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국제법학회논총』, 제16권 제1호, 1973.
- 김태준, “NLL분쟁과 남북한 해양신뢰구축 방안”, 『국방연구』, 제49권 제1호, 2006,6.
-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 과제 그리고 추진전략”, 『행정논집』, 제32권, 2005.
- 김현수, “국제법상 전쟁수역의 법적 지위”, 『해양전략』, 제89호, 1995.
- 류길재,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평화연구』, 제5호, 1996.
- 류완수, “서해 북방한계선 분쟁 해결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 리영희, “북방한계선은 합법적인 군사분계선인가?”, 『통일시론』, 통권 제3호, 1999.

- 박용현, “남북기본합의서에 관한 법적 재조명”,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2001.
- _____, “동북아지역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 『한국동북아논총』, 제2집 1호, 1996.
- 박창권, “서해북방한계선과 남·북한관계”, 『STRATEGY 21』, 통권 12호, 2003.
- 백진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문제”, 『서울대학교법학』, 제42권 2호, 2000.
- 변창구, “ZOPFAN Policy of ASEAN”, 『효대논문집』 제37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88, 8.
- 오병철, “북방한계선 분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0.
- 이석용, “우리나라의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고찰”, 『해양정책연구』, 제4권 1호, 1989.
- 이장희,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실천방안”,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1호, 1998.
- _____, “서해5도의 국제법적 쟁점과 그 대응방안”, 『한국외대 외법논집』, 제10집, 2001, 8.
- _____,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외대 외법논집』, 제12집, 2002.
- 이철기,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한국국제정치논총』, 제37집 2호, 1997.
- 임규정, 서주석,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고찰과 현실적 과제”, 『현대이념연구』 제14집, 군산대학교, 1992, 2.
- 정갑용, 주문배,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 제성호,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서울국제법연구』, 제5권2호, 1998.
- _____, “북방한계선의 법적 유효성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앙법

- 학』, 제7집 제2호, 2005, 8.
- 최종화, 김영규, “북방한계선과 서해5도 주변수역의 해양법문제”,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6권 1호, 2004, 7.
- 최진모, “서해상 남북한간의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해양대학교, 2003.
- 최철영, “남북간 군사적 합의와 한국정전협정의 효력”,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2004.

II. 외국문헌

1. 단행본

- 國際法學會編, 『國際關係法事典』, 東京: 三聖堂, 1995.
- Subedi, Surya., *Land and Maritime Zones of Peac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 Clarendon Press, 1996.
- Gamble, J.K. and Pontecorno(eds.),G., *The Law of the Sea: The Emerging Regime fo the Oceans*, Ballinger Publishing Co., 1973.
- Bowett, D. W.,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Oceanna Publications Inc., 1979.

2. 논문

- Karl, D. E., "Island and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al Shelf : A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71, 1977.
- Cooper, J.,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 Area", *Ocea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6, 1986.

III. 기타자료

1. 국제기구문서

UN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on the Indian Ocean as a Zone of Peace, Resolution 2832(XXVI), 16 December 1971.

2. 웹사이트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084&SN=10&MSN=1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22&SN=1&MSN=1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11&SN=3&MSN=1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11&SN=4&MSN=1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11&SN=5&MSN=1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11&SN=6&MSN=1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082&SN=2&MSN=1

http://dialogue.unikorea.go.kr/sub2/sub2_2.asp?CL=160&SN=1&MSN=1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02315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295697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or.kr>

3. 신문기사

중앙일보, 2000년 2월 26일자.

중앙일보, 2000년 4월 10일자.

중앙일보, 2001년 2월 15일자.

4. 기타

웅진군청, 웅진군 통계연보, 2006.

Abstract

A Study of Peaceful Settlement on the West Northern Limited Line Dispute

Lee Dong-Hyeok

Department of Maritime Law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Korea

The Northern limit line(NLL) was set by the U.S.-led United Nations military forces in August 1953 after the UN Military Command and North Korea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It is not officially recognized by North Korea. In particular, it is not included into the Armistice Agreement of 1953.

The West NLL was based on article 13(b) and provisory clause of the article of the Armistice Agreement as military contact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has brought sharp military conflicts in 1992 and 2002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se incidents were resulted from conflicts over the validity of the NLL and the appropriate maritime boundary between two Koreas.

From the viewpoint of South Korea, the NLL is a lawful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under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nd it must be maintained as a maritime boundary between two Koreas until being substituted by a peace treaty. But North Korea

claims that the NLL is not sea demarcation line, because the NLL was established by the US unilaterally without prior agreement or notification.

This study would examine whether the West Northern Limit Line is valid or not, and show the way of peaceful settlement on the West Northern Limit Line.

And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ssible alternatives are to create of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and establish of new maritime boundary as conversion to Peace Regime.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s economic solution to create common interest through cooperation in the joint fishery zone.

If the Armistice Agreement is converted into Peace Regime, South and North Korea have to recognize each other as a Nation. And then, they would have to establish new maritime boundary through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and principle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ut until the current regime converted into peace regime, the NLL is regarded and maintained as a lawful sea demarcation line.